

2024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안내 자료



2024. 3. 20.(수) 15:00



광 산 중 학 교

1	학교 소개	
	교훈, 연혁, 학교 현황, 담임 교사 및 보직 교사 안내	1
2	교무기획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관련(학사일정)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 기록 지침	8
	2024학년도 원격수업 운영 기준	12
	부패 예방 청렴 교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18
	교권보호 교육	20
	통합교육안내	23
	진로 상담 안내	25
3	창체정보부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26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전 안내	29
4	교육연구부	
	공교육 정상화법 및 선행교육 근절	31
	주요 평가 규정 및 평가 실시 계획	33
5	학생생활안전부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34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35
	언어폭력 예방교육	38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39
	가정폭력 예방교육	41
	아동학대 예방교육	44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47
	성(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통합 예방 교육	49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52
	청소년 자녀를 돕기 위한 자살예방 지침서	54
	Wee 클래스 이용 안내	56
	학교안전계획	58
	교육복지로 즐겁고 신명나는 학교생활	60
	성(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	61
	가정안전교육	63
6	1학년부	
	2024학년도 1학년 생활 안내	67
7	2학년부	
	2024학년도 2학년 생활 안내	70
8	3학년부	
	2024학년도 3학년 생활 안내	72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안내	75



광산중학교

학교 소개

■ 교운

-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 바르게 행동하는 학생
- 꿈과 끼로 성장하는 학생

■ 학교 연혁

- * 1984. 12. 04. 광산중학교 설립 인가 (12학급)
- * 1985. 05. 18. 개교
- * 1988. 02. 11. 제1회 졸업
- * 2012. 03. 02. 교과부지정 창의·인성 모델학교
- * 2013. 03. 01. 교과부지정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
- * 2014. 03. 01. 창의·인성 모델연구학교 운영
- * 2015. 03. 01. 스마트미디어 청정연구학교 운영
- * 2016. 03. 01.~ 현재 빛고을 혁신학교 운영
- * 2021. 01. 12. 제34회 졸업식(69명, 총 졸업생 8,004명)
- * 2021. 03. 01. 제17대 이정상 교장선생님 취임
- * 2021. 03. 02. 제37회 입학식(66명, 남 26명, 여 40명)
- * 2022. 01. 06. 제 35회 졸업식(총 졸업생 8,065명)
- * 2022. 03. 02. 제38회 입학식(103명, 남 43명, 여 60명)
- * 2023. 01. 06. 제36회 졸업식(68명, 총 졸업생 8,133명)
- * 2023. 03. 01. 제18대 한명희 교장선생님 취임
- * 2023. 03. 02. 제39회 입학식(87명, 남 43명, 여 44명)
- * 2024. 01. 08. 제37회 졸업식(68명, 남 30명, 여 38명)
- * 2024. 03. 04. 제40회 입학식(81명, 남 41명, 여 40명)

■ 본교 연왕(3월 8일 기준)

* 학생 현황

구분 \ 학년	1		2		3		계		합계
편성학급	4		3		3		10		
학생수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50명
	41	40	39	41	43	46	123	127	

* 교직원 현황

직명	교장	교감	부장 교사	교과 교사	특수 교사	진로, 상담	보건 교사	소계	행정 실장	일반직	실무 사	영양 사	기타	소계	총계
인원	1	1	7	15	2	2	1	29	1	3	6	1	6	17	46

■ 학급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 학급 담임 및 부담임 교사(14학급, 특수학급 포함)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반	담임	부담임	반	담임	부담임	반	담임	부담임	반	담임
1	백은정(기가)	정지선 (국어)	1	김의진(음악)	오정희 (영어)	1	이은지(국어)	정영재 (진로)	1	박유리
2	김큰샘(도덕)	민진희 (영어)	2	김지연(과학)	이다현 (국어)	2	최동현(체육)	조윤희 (영어)	2	임형기
3	윤준성(미술)	김한울 (과학)	3	이덕형(역사)	김성일 (정보)	3	이세진(기가)	김순심 (중국어)	부담임 (1,2반)	김미경
4	도은아(사회)	한미다 (수학)	4	박은수(체육)	박혜은 (상담)	4	최윤중(과학)	김종훈 (수학)	실무사	김인희

* 보직교사

보직	교사	보직	교사
교무기획부장	조윤희	1학년부장	백은정
교육연구부장	이다현	2학년부장	김의진
학생생활안전부장	김종훈	3학년부장	이은지
창체정보부장	한미다		



교무기획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관련

■ 교육과정 편성

- 연간 수업일수 191일(주당 1, 2, 3학년 32시간 운영: 7교시 수업 주 2회(화,목)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운영 시간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1학년은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라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일과 시간 운영

일과 시간 운영표				
구분		시작	끝	시간
자치상담활동 주변활동		8:40	8:50	10분
1교시		9:00	9:45	45분
2교시		9:55	10:40	45분
3교시		10:50	11:35	45분
4교시		11:45	12:30	45분
점심시간		12:30	13:30	60분
5교시		13:30	14:15	45분
6교시		14:25	15:10	45분
7교시		15:20	16:05	45분
청소시간		청소 및 분리수거	월요일 15:10 ~ 15:25	
			목요일 16:05 ~ 16:25	
방과후	월,금	16:30	17:15	45분
수업	화,목	16:30	18:00	90분
* 월, 수, 금 - 6교시까지 수업 운영 * 화, 목 - 7교시까지 수업 운영				

■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

교과(군)				1학년(2024학년도 입학생)							2학년(2023학년도 입학생)							3학년(2022학년도 입학생)											
				기 준 시수	이수 시수 (자유학기 조정시수 제외)		1학기		2학기		자유 학기 조정 시수 합계	기 준 시수	이수 시수		1학기	2학기	기 준 시수	이수 시수		1학기	2학기								
					교과	자유 학기	교과	자유 학기	교과	자유 학기			교과	자유 학기				교과	자유 학기			교과	자유 학기	교과	자유 학기	교과	자유 학기		
공통 교과	국어			442	119		51	17	68	17	442	136		68	68	442	136		68	68									
	사회 (역사 포함) /도덕	사회			510	85	153	34	17	51	17	510	102	170	51	51	510	68	136	34	34								
		역사																											
		도덕																								34		34	
	수학			374	119		51	17	68	17	374	136		68	68	374	102		51	51									
	과학 (기술·가정 /정보)	과학			680	85	170	34	17		17	680	136	272	68	68	680	136	238	68	68								
		기술·가정				17		17	34	17	102				51	51				102	51	51							
		정보									34					17				17									
	체육			272	102		51		51		272	102		51	51	272	102		51	51									
	예술 (음악/미술)	음악			272	51	102	17	17	17	17	272	68	68	34	34	272	68	68	34	34								
미술			17	17		34		17								68					34	34							
영어				340	85		34	17	51	17	340			68	68	340	102		51	51									
선택 교과	한문										택 1				택 1	102	170	136	51	51									
	생활 중국어																												
	진로와 직업																				택 1				택 1	34		17	17
	보건																												
교과(군) 소계 (자유학기조정시수제외)				3,060	A	850	357	136	493	136	3060	1020		510	510	3060	1020		510	510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 활동			306	14	85	7		7			14	68	7	7		14	68	7	7									
	동아리 활동*				12		6	6		12				6	6					12	6	6							
	봉사 활동				8		4	4		8				4	4					8	4	4							
	진로 활동				51		17	17	34	17					34				17	17		34	17	17					
	소개(창체)				85	34	17	51	34		68	34	34		68	34	34												
	동아리 활동(학교 스포츠 클럽)				17		17	17	17		34	17	17		34	17	17												
합계(창체+스포츠)				B	102	34	34	68	34		102	51	51		102	51	51												
자유 학기 활동	진로탐색활동			17	17	170		17		17																			
	주제선택활동			68	68			68		68																			
	예술·체육 활동			68	68			68		68																			
	동아리활동			17	17			17		17																			
	자유학기 활동 소개			170	C			170		170											170								
학년/학기 시수 총계 (교과(A)+창체(학교스포츠포함)(B) +자유학기조정시수(C))				1,122		391	170	561		1,122		561	561		1,122		561	561											
학기별 이수 과목 수(예체능, 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제외)						8		8				8	8			8		8											
학교스포츠클럽 시수확보				교과(군) 20%강축(국어)(34시간) 교과(군) 20%증배(체육)(34시간) 교과(군)20%강축(선택)(34시간) 창체활동(0), 창체순증(0)						교과군 20% 강축(0시간) 창체활동(34시간) 창체순증(0시간)						교과군 20% 강축(0시간) 창체활동(34시간) 창체순증(0시간)													

2024학년도 학사일정

2024학년도 학사일정																						
광산중학교																						
월	주	교 육 행 사															주 계	(수업 일수)				
		월			화			수			목			금					토			
3														1	삼일절	2	토요일휴무일	0	20			
	1	4	입학식, 개학일 오리엔테이션			5		6	교직원회의			7		8		9	토요일휴무일	5				
	2	11	학급임원선출			12	진로표준화검사			13	학생상담주간 (~3.17.)			14		15	1학년 책임학년제 자율평가	16		토요일휴무일	5	
	3	18	1학년 책임학년제 자율평가			19		20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상담주간 (~3.27)			21		22		23	토요일휴무일	5				
	4	25	진단평가 1,2,3학년 (국, 수, 영)			26		27		28		29	월말통계	30	토요일휴무일	5						
4	5	1				2		3	교직원회의			4		5		6	토요일휴무일	5	21			
	6	8	인성교육주간 (~4.12)			9		10	22대 국회의원 선거			11		12		13	토요일휴무일	4				
	7	15				16		17		18		19		20	토요일휴무일	5						
	8	22				23		24	1차지필평가 (2,3학년)			25	1차지필평가 (2,3학년) 역사탐방(!학년)			26	27	토요일휴무일		5		
	9	29				30	월말통계											2				
5	9							1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2		3		4	토요일휴무일	2	20			
	10	6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7		8	교직원회의			9		10	스포츠한마당	11	토요일휴무일	4				
	11	13				14		15	부처님오신날			16		17	5.18.민주화 운동	18	토요일휴무일	4				
	12	20				21		22		23		24		25	토요일휴무일	5						
	13	27				28		29		30		31	월말통계	1	토요일휴무일	5						
6	14	3	환경교육주간 (~7일)			4		5	교직원회의			6	현충일	7	재량휴업일	8	토요일휴무일	3	18			
	15	10				11		12		13		14		15	토요일휴무일	5						
	16	17				18		19		20		21		22	토요일휴무일	5						
	17	24				25		26	교직원회의			27		28	월말통계	29	토요일휴무일	5				
7	18	1				2	2차지필평가 (2,3학년)			3	2차지필평가 (2,3학년)			4	2차지필평가 (2,3학년)			5	8	토요일휴무일	5	16 (1학기)
	19	8				9		10		11		12		13	토요일휴무일	5						
	20	15				16		17	교육과정평가회			18		19		20	토요일휴무일	5				
	21	22	1학기 종료일 월말통계			23	2학기 시작일			24		25		26	여름방학선언 월말통계	27	토요일휴무일	1	4 (2학기)			
1학기 합계		20			20			17			19			19						95	95	
학년별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	.	.	1년	2년	3년
교사 일수		0	0	0	0	1	1	0	2	2	0	2	2	0	0	0				0	5	5
수업일수		20	20	20	20	20	20	17	17	17	19	19	19	19	19	19				95	95	95

월	주	교 육 행 사											주 계	월계 (수업 일수)					
		월			화			수			목				금			토	
8	2				13	개학일	14			15	광복절	16			17	토요일휴무일	3	13	
	3	19			20		21		22		23			24	토요일휴무일	5			
	4	26			27		28		29		30	월말통계	31	토요일휴무일	5				
9	5	2			3		4	교직원회의	5		6			9	추석연휴	5	18		
	6	9			10		11		12		13		14	토요일휴무일	5				
	7	16	추석연휴	17	추석연휴	18	추석연휴	19		20			21	토요일휴무일	2				
	8	23			24		25		26		27		28	토요일휴무일	5				
	8	30	월말통계 1차지필평가 (1,2,3학년)												1				
10	9				1	1차지필평가 (1,2,3학년)	2	교직원회의	3	개천절	4			5	토요일휴무일	3	21		
	10	7					9	한글날	10	수련회(1,3) 수학여행(2)	11	수련회(1,3) 수학여행(2)	12	토요일휴무일	4				
	11	14	진학설명회 학부모상담주간 (~10.27)	15		16		17		18			19	토요일휴무일	5				
	12	21			22		23		24		25		26	토요일휴무일	5				
	12	28			29		30		31	월말통계					4				
11	13											1		2	토요일휴무일	1	19		
	14	4			5		6	교직원회의	7		8		9	토요일휴무일	5				
	15	11			12		13		14	대학수학능력 시험	15	재량휴업일	16	토요일휴무일	3				
	16	18			19		20		21		22		23	토요일휴무일	5				
	17	25			26	2차지필평가 (3학년)	27	2차지필평가 (3학년)	28	2차지필평가 (3학년)	29		30	토요일휴무일	5				
12	18	2			3		4	교직원회의	5		6			7	토요일휴무일	5	21		
	19	9			10	2차지필평가 (1,2학년)	11	2차지필평가 (1,2학년)	12	2차지필평가 (1,2학년)	13		14	토요일휴무일	5				
	20	16			17		18	교육과정평가회	19		20	어등축제	21	토요일휴무일	5				
	21	23			24		25	성탄절	26	진급졸업심의 회	27	학생회장 선거	28	토요일휴무일	4				
	22	30			31	월말통계 졸업식, 종업식							30	토요일휴무일	2				
1																			
2		24	부장 워크숍	25		26	신학기 교직원 연수	27	신학기 교직원 연수	28									
2학기	합계		19		21		18		18		20			96	96				
학년별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교사 일수		1	1	1	2	2	2	1	1	1	1	1	1	0	0	0	.	.	.
수업일수		19	19	19	21	21	21	18	18	18	18	18	18	20	20	20			
연간 총수업일수		39	39	39	41	41	41	35	35	35	37	37	37	39	39	39			

■ 개인별 교외 체험학습 신청 관련

- 신청 방법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체험학습계획서(신청서, 서약서, 계획서 각 1부)를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총 10일 이내)
 - 운영 단위 필요시 반일(4시간) 신청 가능
 - 학교장의 허가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 1부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
(관련 양식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혹은 담임 선생님께 문의)

■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 전 학년 단체봉사활동(교내) 8시간 실시한다. 2024학년도 기준 연간 7시간 이상 만점
- 나눔포털을 이용하는 개인 봉사활동은 사전 봉사계획서가 필요 없으나 나눔 포털을 이용하지 않는 봉사활동은 사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받은 봉사활동만 인정한다.
- 개인병원, 사설유치원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에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지역 사회의 행정기관(시청, 동사무소,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과 공공기관(금융 기관,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의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인정한다.
- 봉사활동 대상터전 안내에 소개된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한다.
- 유아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인 기관만 인정한다.
- 그 밖의 기관은 수시로 봉사활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 1일 근로 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이면 1시간, 6교시이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을 인정한다.
- 봉사활동의 분 단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 봉사활동 시간이 1시간 30분인 경우 → 1시간만 인정)
- 봉사활동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선행 활동', '징계로 인한 봉사'는 학교생활기록부 내 봉사활동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교무기획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지침

1

기본원칙

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 작성 기재는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라 처리

- 다만, 기재요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코로나19 대응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한 내용 중 변경 사항은 본 안내를 따름

나. 관련 근거

-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중지)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10-1판)

다. 변경 사항

주요내용	코로나19 2급 운영 시	코로나19 4급 전환 후
등교중지 (증빙자료)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일)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음성) 보호자 확인서 등	출석인정 : 현행 유지 ※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유지 시 출석 인정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현행 유지 ※ '24년부터는 '심각' 단계에서만 가정학습 운영 예정
백신 접종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접종 후 3일~ : 질병결석	현행 유지
분리고사실	의무 운영	운영 권장 ※ 운영여부·방식 등 학교장 판단 가능
인정점	확진학생: 100% 유증상자: 100%	확진자 : 현행유지(100%) 유증상자 : 당일(100%) ※ 음성이나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석종류·인정점 결정
원격수업 운영일수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일수 입력	현행 유지 ※ (참고) 학교의 원격수업 일수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원격수업도 포함

2

세부내용

1. 출결 처리

-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른 등교중지 시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 지각, 조퇴, 결과도 결석과 동일하게 처리
-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으로 학교장이 등교중지를 명령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인정**
 - ※ 단,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등은 학교장이 결석 종류 결정
- **기저질환자*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로 유지되는 동안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해 출석인정 결석 처리 유지**
 - *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 참고,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 코로나19 관련 기저질환자 출석 인정 관련 질의(질병청과의 협의 결과 반영)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함**
 - * 2023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23.1.11.) 참조, 학급단위 원격수업 운영시,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체류 학생 등)이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하더라도 출석 처리 불가
 - **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원격 송출하는 경우 포함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 확인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성확인 문자로 대체 가능
- **(가정학습일 수)** '23학년도에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되, **일수는 학칙에서 정한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수 범위 내에서 포함하여 운영**
 - 단, '24학년도부터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만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로 인정 예정
 - ※ 교외체험학습 담당자 협의완료('23.5.18.,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 증빙 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사'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중등은 결석의 종류에 따라 인정점 부여			

2. 학생 평가

- **(분리고사실)** 학교 시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고사실 운영을 권장
 - 다만, 학교별 확진자 발생률, 시설 등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운영 여부, 방법 등 결정 가능
 -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관련 변경사항 안내(중대본-9788, '23.8.18.)
 - **(마스크)** 확진자는 KF94 또는 동급 마스크 의무 착용하고, 모든 수험자 개인방역 수칙 준수 안내 및 시험실 내 마스크 착용 권고
 - ※ 마스크 착용 안내서(제9판) 참고
 - **(식사)** 시험 중 식사 시간 포함 시, 확진자 식사 공간 분리
 - * 식당 이용 시간 분리 또는 별도 장소 마련 등 동선 분리, 식사 후 화장실(양치 등 개인위생)에 물리지 않도록 시간 조정 안내 등 조치 필요
- **(인정점 부여)**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유증상자(의료기관 음성 판정)는 당일에 한해 인정점 100% 부여
 - ※ 단,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등은 학교장이 결석 종류 및 그에 따른 인정점 부여 비율을 결정
 -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에 따른 학업성적관

리규정을 근거로 인정점 부여

- ※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 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22.5.31., 시도 부교육감회)

3. 학생부 기록

- **(고교 원격수업 운영일수)** '일괄입력' 기능을 활용하여 전체 학생 '출결 특기사항'에 원격수업 운영일수 입력(예시: 원격수업일수 00일)
 - 개인별 원격수업 참여일수가 아닌 학교(또는 학급)의 원격수업 운영일수*를 입력, 위탁 학생은 소속교의 원격수업 운영일수를 입력
 - * 원격수업 운영일수가 0일인 경우에도 (원격수업일수 0일)로 입력
 -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외에 태풍·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운영한 원격수업 일수도 포함
 - 3학년은 수시·정시모집 학생부 마감일 기준으로 원격수업 운영일수 입력 후 졸업 시 2023학년도 전체 원격수업 운영일수로 수정
 - 전출입, 재·편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기준으로 원격수업 운영일수 입력

- ① (전출입) 전출교의 원격수업 운영일수와 전입교의 원격수업 운영일수를 전출입교에서 각각 구분하여 입력*
 - * 예시: "원격수업일수 00일(전출일 까지)"(전출교에서 입력), "원격수업일수 00일(전입일 이후)"(전입교에서 입력)
 - ※ 학생 전출 시 출결 특기사항에 해당 학생의 원격수업일수를 입력하여 전송
- ② (재·편입학) 재·편입학 시부터 학생부 마감일(진급, 졸업, 대입전형자료 생성 시)까지의 원격수업 일수 입력*
 - * 예시: 원격수업일수 00일(학업중단 일까지), 원격수업일수 00일(재입학/편입학/복학 이후)
 - ※ 2021학년도 학업중단 후 2022학년도 재·편입학 한 경우, 학업중단 이전과 재·편입학 이후의 원격수업 일수를 각각 입력(중복기간 미삭제)
- ③ (학업중단) 원격수업 시작일부터 학업중단일까지의 원격수업일수 입력



교무기획부

2024학년도 원격수업 운영 기준

I 추진 근거 규정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24조제3항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수업 등)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0. 10. 20.>

1.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2.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 학습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원격수업 운영 근거를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2020.12.31. 고시)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0-248호), 특수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0-249호)

제 II 장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사항 ‘차’항 학교는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3.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약칭: 원격교육법)

[시행 2022.3.25.] [법률 제18459호, 2021.9.24. 제정]

제1장 총칙, 제2장 학교 등의 원격교육, 제4장 원격교육 활성화 여건 조성 등 참조

II 운영 개요

1. 운영 일시: 2024.03.04.(월)부터 적용
2. 운영 대상: 1, 2, 3학년
3. 운영 방법: e-학습터(학급형)
4. 원격수업 운영위원회 구성: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위원 및 각 학년부장을 위촉하여 수업방법 변경 등 주요 운영사항을 협의

【원격수업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교장, 교감, 교육연구부장, 연구기획, 교과부장, 각 학년부장
- (주요기능) 학교 원격수업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 원격수업 자료 및 콘텐츠 질 관리 등 그 밖에 원격수업 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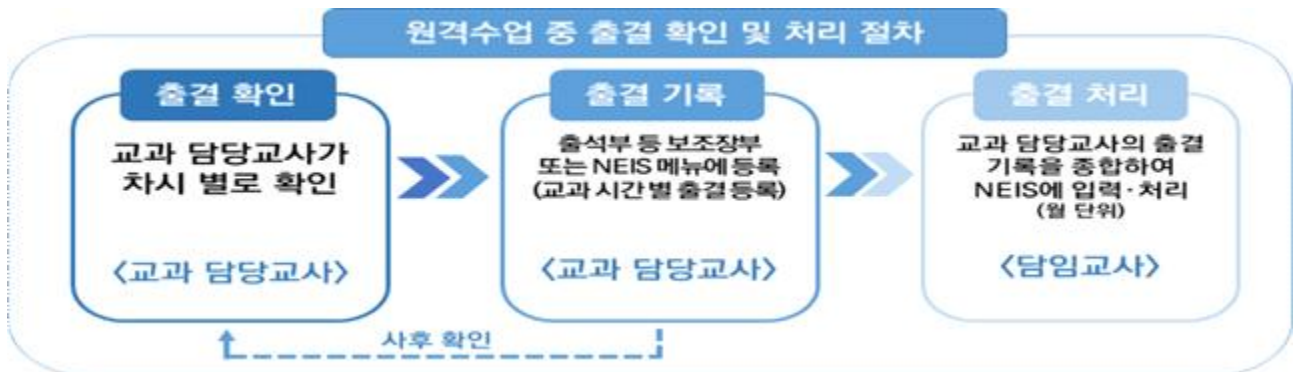
5. 원격수업 교과목 및 개설 기준

가. 2024학년도 학교교육과정편성과 동일한 교과목 개설

나. 2024학년도 교육과정편성에 따른 학년-반별 시간표 활용

- ※ 학생들의 균형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목 교육과정을 월별(주별)로 편성 제공
- ※ 학습내용, 학습방법 과제수업 이수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원격수업계획을 학교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6. 원격수업의 출석관리



가. 출결 확인

- 당일 교과별 차시단위로 실시하되, 3일(수업일 기준) 내 최종 출결확인(공휴일 제외)
-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교과별 해당 시간)이 원칙이며,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하되, 출결 확인 기간(3일, 수업일 기준)은 학교장이 임의 변경 불가

나. 출결 기록

- 교과교사가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차시별로 출결 보조장부 (출석부) 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메뉴에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 기록

- 교과교사와 담임교사가 미수강 학생 수강 독려

다. 출결 처리: 교과교사의 출결 기록(출석부 등)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확인 후 담임교사가 1주일(7일) 단위로 종합하여 월(月)단위 출결(마감) 처리* 가능

- 학습진도율 60% 이상 이수시 출석 인정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처리하되, 학교장이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해 출결(마감) 처리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 결정 가능

- 학급단위* 이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 *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학급을 분반하여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경우 포함
-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개인 단위 등교 중지 등으로 개별 학생에게 온라인 등으로 제공한 대체 학습은 원격수업으로 미인정(출석인정 결석 처리)
-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라. 실시간 조·종례 운영은 교육정보시스템(NEIS) 출결관리와 별도로 운영(NEIS에 반영하지 않음)

※ 교육정보시스템(NEIS) 조·종례 출결관리 방법: 조회(종례)는 '결석' 처리 또는 1교시(마지막 교시) 불참자의 '지각(조퇴)' 처리 시에만 결과 처리

【실시간 조·종례 운영】 ※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육안전망 안착 지원 방안'(20.9.15.)'

- (방식)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 또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
 - * 화상 기반 프로그램(플랫폼 또는 학습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그룹대화방 등
- (내용) 출결 및 건강상태 확인, 당일 원격수업 내용 개요 등을 주제로 소통
- (미참여 학생) 전화 또는 개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조·종례 내용을 전달하고 특이사항 파악

마. 등교수업 기간 중에는 '등교중지 및 고위험군 학생' 이외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이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결 처리 불가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분반 포함)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는 원격수업 수강내역으로 출결처리 불가

바. 수업 유형별 출결 확인·인정 방법

- 원격수업에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이 포함되며,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혼합하는 등 다양한 원격수업 형태를 자유롭게 활용 가능
- 본 지침의 유형별 확인·인정 처리 방법 등을 활용하여 출결을 확인(인정)하고 기록하되, 필요시 각 방법을 혼합하여 활용할 수 있음
 - ※학생 모둠활동 등 과제중심 원격수업의 경우, 'LMS 접속기록'이 아닌 '과제수행 여부'로 출석 확인 가능
- 학교별 여건 및 특성에 따라 교육청 원격수업 운영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
 - ※ 단, **출석 확인(인정)기간***은 학교에서 임의 변경 불가(전국 공통)
 - * 실시간 쌍방향 수업: 당일(해당 시간), 이외 유형: 당일(최종 3일 내)
- 공공 LMS 플랫폼 내 학급방, 출결증빙 자료 등은 해당 학년도 내에서만 유효하며 학년도 종료 시 일괄 삭제됨(필요한 자료 학년도 종료 전 다운로드)
 - 출석부 등 보조장부 또는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출결기록 관리 철저**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

수업 유형	출석 확인 방법					
	실시간	LMS 활용 방법*			기타(대체 확인)-택1	
	교사 확인	접속 기록	진도율 (60%이상)	산출물 탑재	SNS/ 메시지**	증빙자료
실시간 쌍방향	○	○	○		○	○
콘텐츠 활용		○	○		○	○
과제 수행		○	○	○	○	○
확인(인정) 기간	당일 ***	당일(최종 3일(수업일 기준) 내)				

* e학습터, ebs클래스, 클래스팅, 구글 클래스룸,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MS팀즈 등

** 실시간 쌍방향 수업: 접속불가 사실 소통(대체학습 부여) / 이외 유형: LMS 활용이 어려운 경우 수강 사실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접속 불가 등의 사유로 대체학습을 부여한 경우 3일(수업일 기준) 내

사. 실시간 쌍방향 수업

- 확인·인정 방법: 교사가 플랫폼 화면, 실시간 댓글(플랫폼, e-학습터 학급 게시판) 등을 활용해 학생의

출석(참여)여부 확인(인정)

- 대체 확인 방법: 접속 불량 등의 사유로 실시간 접속이 불가능한 학생은 대체학습을 제시(당일)하여 3일

이내 그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확인·인정

※ SNS,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접속 불가 사실 확인 후 대체학습을 부여한 학생에 한하여 출석 처리 가능

아.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확인·인정 방법: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해 학습시작일, 진도율, 학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출석 확인(인정)

- 대체 확인 방법: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과제물 제출, SNS, 유선전화, 문자 메시지 등 활용

※ ('출결 처리'를 위한 이수 기준 60% 이상):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 결정(미충족 시 '결석(결과)' 처리)

- e학습터 활용 출석 인정 기준

※ 이수율(e-학습터): 60%이상 (단, 창의적체험활동은 접속 기록만으로 출석 인정)

※ 당일 접속 기록 + 진도율(60%이상) 당일 또는 3일 내 충족 시

※ 당일 접속 기록이 없을 시에는 해당일 전체 결석 처리

자. 과제수행중심 수업

가. 확인·인정 방법: LMS를 활용한 접속 기록, 과제수행 결과물 제출 여부를 기준으로 출석 확인·인정

나. 기타: 과제 인정기준(인정 수준, 분량)은 교육청 세부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 여건에 따

라 별도 마련,

학생의 수준을 감안한 과제 제시

차. 기타 유형 수업

- (확인·인정 방법) 교육청 세부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 출석 인정기준, 출석 인정 증빙 자료, 제출기한에 따라 확인 및 기록

카. 학생 관리

- 학생의 장애, 물리적 환경 등에 따라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한 학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공한

대체학습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 장애학생, 지리적·물리적 환경에 의해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학생 등

** (예시) 서면 학습자료 및 과제 제공, 등교 시 학부모 학습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

※ 기한 내 원격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 교외 체험활동 신청에 따른 출석 인정 결석자는 대체 학습을 통해 해당 수업의 출석인정 처리가 불가능함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본인의 등교수업일에 **희망에 따라**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처리

-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 코로나19 임상증상 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기한(5일 또는 학교장이 정한 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결석 처리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중 등교중지 학생 출결 예시>

- (예1) 전면 등교수업 운영 중인 A학교의 등교중지 학생 홍길동: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수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등교중지 기간 동안 출석인정결석
- (예2) 전면 원격수업 운영 중인 A학교의 등교중지 학생 홍길동: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 결석할 시 출석인정결석
- (예3) 짝수 번호는 등교수업, 홀수 번호는 원격수업 운영하는 A학급의 등교중지 학생 홍길동(짝수 번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수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등교중지 기간 동안 출석인정결석. 다만, 학생의 희망에 따라 A학급의 홀수 번호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수강하였을 시 출석처리함
- (예4) 짝수 번호는 등교수업, 홀수 번호는 원격수업 운영하는 A학급의 등교중지 학생 홍길동(홀수 번호):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 결석할 시 출석인정결석
- (예5) 1반은 등교수업, 2반은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A학교의 1반 학생 홍길동이 등교중지 대상일 경우: 등교중지 기간 동안 출석인정결석이며 2반의 원격수업을 들어도 이를 출석처리하지 않음

- 장기결석 학생 관리: 학교장이 정한 기간 이상 **장기결석 시** ①유선 확인 및 출석 독려, ②소재 확인 불가 시 교육정보시스템(NEIS) **미인정 결석 등록 및 수사의뢰**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 ②항 5목 및 ③항, 제92조의2 ②항

7. 수업 시간

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 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수업량 확보

나. 학교 급, 학습내용의 수준, 학생의 학습부담,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 원격수업 운영 시 단위 수업시간에 준하여 운영하되, 원격수업 준비시간, 원격토론, 학습보고서 작성 등 학생 과제 수행 및 피드백 시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다.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수업 제공

- 단편적 강의 위주의 콘텐츠 학습만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학생의 생각 표현과 활동의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수업을 제공하며, 학업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생별 피드백을 제공

라. 학생의 원격수업 참여를 위해 노력하며,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위한 대체학습 또는 보충학습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여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 대체학습 게시판 개설: e-학습터 게시판에 <학습결손 방지를 위한 학습자료>방을 운영하여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

바. 학습 내용, 학습 방법, 과제 등을 포함한 원격수업계획을 학교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교무기획부

부패 예방 청렴 교육(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법률 제정 배경

-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
- ※ '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조사 결과,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 국민의 경우 59.2%에 달함
- 공직사회의 부패 실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공직자의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 '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조사 결과, 공무원의 3.4%만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 국민 의 57.8%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 포함
 -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 부정 청탁의 금지

○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는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

※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

- 인가·허가·면허 등 처리 직무
-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 각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 직무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 병역 관련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 수수 금지 금품등 및 처벌 수준
 - *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
 - *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교무기획부

교권 보호 교육

■ 교권이란?

-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 교육할 권리, 전문직 종사자의 권리, 인간으로서 기본권 → 교원의 직무 수행에 수반되는 권한
 - 교육과정을 편성할 권리, 교육할 내용과 방법을 결정할 권리, 학생을 지도, 징계, 평가할 수 있는 권리 등

■ 교권, 이렇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2019.12.10. 개정 2020.6.11. 시행)
 - (특별법 제15조 및 제16조)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은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특별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0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전문 상담 및 치유를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운영
 - (특별법 제 18조 및 시행령 제 11조)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부과 가능
 - (특별법 제 15조 및 시행령 제 2조의 3)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 유형 적시

■ 법에서 말하는 교권침해는?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제2조)

-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교권 침해 행위자에 대한 조치

	개정 교원지위법 이전 «시행일 2019. 10. 17.» 이전	개정 교원지위법 이후 «시행일(2019. 10. 17.)»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교원지위법제17조
가능한 조치	① 학교내의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이수 ④ 1회 10 일 이내 연간 30 일 이내의 출석정지 ⑤ 퇴학처분·퇴학 처분은 의무교육대상자에게는 적용 안 됨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예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처분·퇴학 처분은 의무교육대상자에게는 적용 안 됨

-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침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가능성, 피해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피해 교원의 임신·장애훈여부와 정도, 침해학생의 장애 여부와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 교권을 같이 보호하기 위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가. 관련:

- ① 교육부 교원정책과-6141(2023.8.24.)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
- ② 유초등교육과-8659(2023.8.24.) 광주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 강화방안 안내

나.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24. 3. 28.**자로 시행됨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폐지**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교(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요 변경사항]

① '교권보호위원회'변경사항

- ' 24.3.28. 교육지원청 이관 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 2024학년도 학교 교권보호 업무 담당자 지정 필요
- (학교 담당자 역할) 피해자 즉시 보호조치, 사안 신고 및 보고, 사안 조사, 조치사항 이행
- ' 24.3.28. 이전에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제반 자료 전체를 ' 24.4.11 까지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세부사항 추후 공문 안내 예정)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광주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내 설치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포함) 교육활동 침해 여부 및 피해교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조치 심의의결,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심의

② '교원책임배상보험'변경사항

- 3월말까지 기존 보험계약 연장, 4월부터 보장내용 확대(세부사항 추후 공문 발송 예정)
- 보장내용 확대사항

기존(~24.3.31.까지)	변경(24.4.1.~25.2.28.)
* 배상책임 * 민·형사 소송비용	* 배상책임 * 민·형사 소송비용 * 상해 치료비 * 재산상 피해비용 * 위협대처 보호서비스 * 교육활동 침해 분쟁조정 서비스

※ '2024학년도 광주광역시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은 3월 중 법령 시행 전 안내 예정.



교무기획부

통합교육 안내

■ 특수교육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최근 들어 TV를 통해 '장애인'이나 '특수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친척이나 이웃 중에서 장애학생을 접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 본교에도 특수학급이 2학급 설치되어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수교육이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정의)에 따르면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이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라고 특수교육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특수학급과 통합교육

- 일반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을 말하는 것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정의)에 따르면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말한다.'라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정의)에 따르면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통합교육이 비장애학생에게 주는 효과

- 인간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장애학생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 발달에 도움이 된다.
- 장애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오해가 감소되어 장애인도 나와 비슷한 점을 많이 지니고 있는 한 사람의 개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며,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게 된다.
- 자신의 건강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를 갖게 되어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다.
- 장애학생을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 자체가 비장애학생에게는 효과적인 인성교육이 될 수 있다. 또한 학교라는 지역사회에서 장애학생을 포함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학습하게 된다.

☎ 상담 문의: 학습도움실 (062-601-6855, 6872)



교무기획부

진로상담 안내

■ 학교 진로교육의 개념

- 학생들이 일생동안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

■ 중학교 진로교육의 목표

- 초등학교에서 함양된 진로개발역량의 기초를 발전시키며 다양한 직업세계와 교육기회를 탐색하고, 중학교 이후의 진로를 디자인하고 준비

■ 연간 진로 활동

○ 진로진학상담

1) 위치 : 후관 1층 진로상담실

2) 진로진학상담실을 이용하는 경우

- 각종 심리검사(흥미검사, 적성검사, 가치관검사, 성격검사 등)를 통하여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직업세계를 탐색해 보고 싶을 때
- 자신의 진로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할 때
- 고등학교의 유형들과 특성 그리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알고 싶을 때
-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에 대해 알고 싶을 때

3) 진로진학상담실 이용 방법

- 진로전담교사의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수업시간 중에도 해당시간 교과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의 허락을 얻어 상담이 가능함
- 아침자율학습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가능함.

○ 진로 탐색 활동

-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 : 다양한 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직업관 형성하여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기회 제공
- 진로 직업 체험 : 직업체험을 안정적으로 확보,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축.
- 진로특강 및 학교 밖 직업 체험활동 실시

○ 진로 심리검사 - 연 2회 실시

○ 직업동영상 시청(한국고용정보원, 커리어넷에 탑재된 직업 소개 예정)

- 매주 진로와 직업 교과 시간 및 창체시간 이용

상담 문의: 진로상담실(062-601-6829)



상계정보부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가입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			인터넷 주소
필수가입	1365자원봉사포털 사이트	1365	www.1365.go.kr
선택가입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이트	VMS	www.vms.or.kr
	청소년자원봉사 사이트	DOVOL	www.youth.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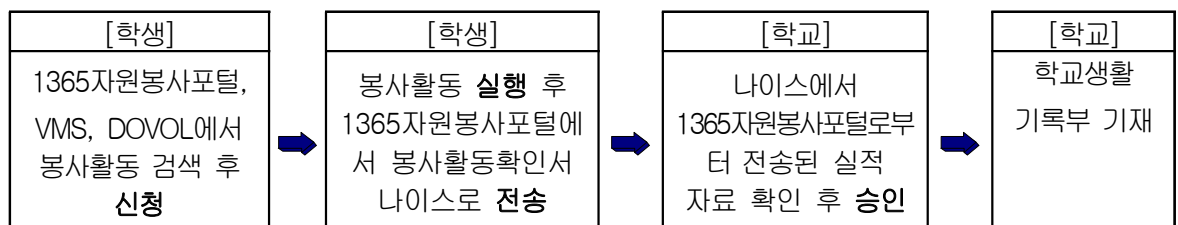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안내

1. 봉사활동의 목표

- 가. 타인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
- 나. 나눔과 배려의 봉사활동 실천으로 이웃과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기르고, 호혜 정신을 기른다.
- 다. 지역사회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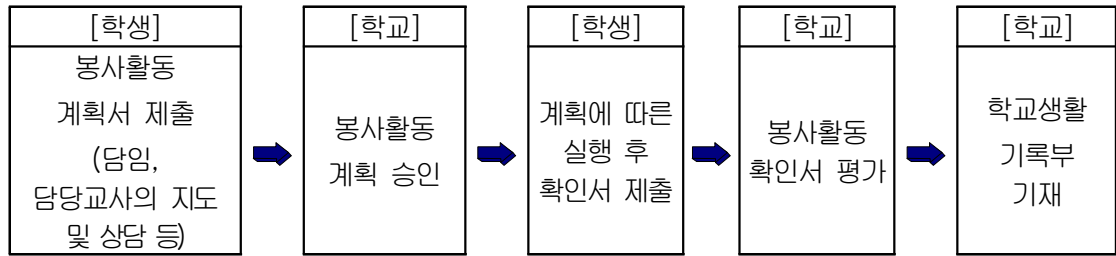
2. 개인 봉사활동 흐름도

- 1)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 안전을 위해 개인 외부 대면 봉사활동 지양
-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담임) 교사와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3)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
로 인정



3)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하는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법인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 나면 인정 불가

4)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 (당일 수업시수 + 봉사시간 = 8시간 이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인정 가능 시간 : 8시간)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
- 학생의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 불가
- 1365자원봉사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함을 의무화함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분 단위는 절사(단, 같은 종류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는 학기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기록)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 정리, 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인정 안 함
-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일체의 활동(재료 구입 후 제작 기부 활동, 연회비, 활동비 등을 내야하는 활동) 인정 불가
- 물품 및 현금 기부, 해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문화 공연의 경우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 시간 및 최종 연습 시간은 인정하되,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제외함.

-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인정
 - 유치원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 노인요양병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경우 인정 가능. 개인 병원은 인정 불가
 - 노인요양원·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등 노인 복지시설 전반 :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을 보유한 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
 - 병원 : 개인병원은 인정되지 않음.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 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 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
-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경우는 「학교봉사활동 추진위원회」 협의를 통하여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함

3.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 봉사활동은 광주시교육청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합니다.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근거하여 자녀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하면 학부모님께서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확인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과정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는, 학부모님의 자녀 아이디·비밀번호 확인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14세 미만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안내 가능)



장계정보부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전 안내

2024년 중학교 1학년 대상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전 안내

- ① 대상 : 광주광역시 관내 중학교 1학년 재학생
- ② 기기 : 노트북
- ③ 방식 : 무상 지원
- ④ 시기 : 2024년 2학기 초 예정
- ⑤ 기간 : ~ 고등학교 졸업시 반납

※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AI 광주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스마트기기를 보급합니다.

- ① AI·에듀테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1:1 맞춤형교육을 지향합니다.
- ② 2025. 3월 AI 디지털교과서(수학, 영어, 정보 +α) 도입을 준비합니다.
- ③ 모든 학생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를 지원합니다.
- ④ AI팩토리(미래교실) 등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AI·SW 교육을 운영합니다.
- ⑤ 학생의 개인별 학습이력과 성장과정을 스마트기기를 통해 효과적으로 기록·관리합니다.

스마트기기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수업전) 자기주도 학습활동



AI 및 SW 코딩수업활동



모둠별 프로젝트 협동활동



AI팩토리 미래교실 연계활동



광주광역시교육청

스마트기기, 이렇게 활용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똑똑하게 공부하자!"

학교에서는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 활용

- 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종이 없는 교과서 수업이 시작됩니다.
- ② 디지털교과서 필기 및 복습을 통한 시공간에 제약 없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 ③ 개인별 학습 e-포트폴리오 누적 및 개인 학습 자료를 모아서 관리합니다.

수업 시간 활용

- ①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교과 선택 및 온라인 수업에 활용됩니다.
- ② 다양한 교과에서 새로운 형태의 수업에 참여합니다.
- ③ 스마트기기 활용 수행 평가 등에 활용됩니다.
- ④ 수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쉽게 설치하고 자료를 공유합니다.
- ⑤ 코딩 및 프로그래밍 앱, 수학 및 과학 시뮬레이션 앱, 증강현실 및 메타버스 앱 등을 활용하여 학습합니다.

학습 플랫폼 활용

- ①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인 스마트 AI홈워크 시스템(광주아이온)을 통해 학습 수준 진단 및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활용합니다.
- ② 클라우드 기반 문서 공유, 화상수업 등을 통한 시공간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조별 과제 수행 및 협력학습을 수행합니다.

학교 밖에서는 이렇게

과제 및 공부

- ① 내 교과서에 필기하고 정리하듯 스마트기기에 정리하여 언제 어디서든 복습합니다.
- ② 원격수업 전환 시 스마트기기로 수업에 참여합니다.

콘텐츠 제작

- 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활용

- ① 나에게 필요한 학습용 앱,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는 학습에 필요한 무선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교육연구부

공교육 정상화법 및 선행교육 근절

가. 추진 목적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14. 9.)에 따른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및 인식 전환 추진
2.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문항 점검 및 「공교육정상화법」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문적 지원 체계 마련

나. 선행학습의 문제점

- ☐ 선행학습 :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
 - ※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어렵게 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을 초래하여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다.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 선행교육

-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앞서는’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함)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 선행학습 유발행위

-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2014.9.12 시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지 행위임

라.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 방침

1)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선행출제 자체점검

가) 점검기준:

- 교과 교육과정 운영 계획(교수학습·평가 계획)과 평가 문항의 일치 여부
- 교과별·학년별 교육과정(성취기준)과 평가 문항 일치 여부 점검

다) 점검교과: 1,2학기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 도덕, 과학 교과(군) 과목 전체

나) 점검시기

- 학교는 시험 출제 전 교과협의회를 통한 선행출제 여부 상호 점검 및 회의록 작성
- 학기별 해당 교육지원청에 점검표 제출
- 교육지원청은 1학기는 표집학교를 점검하고 2학기 수학, 국어, 과학 모든 학교 점검

※ 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시 유의사항:

계획(편성)된 교육과정 운영(교과별 교수·학습·평가 계획과 운영의 일관성 유지),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

2)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마. 학부모의 책무

-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연구부

주요 평가 규정 및 평가 실시 계획

■ 평가 계획

- 지필 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비율과 평가기준은 교과협의회에서 결정
 - 수행평가 반영 비율(중학교: 수행평가 50% 이상 의무 반영)
 - 과목별 평가를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 100% 시행 가능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에 서술형평가를 30% 이상 포함
 - 대상과목: 국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수학, 과학, 영어
- 지필평가 계획
 - 1학기 1차 지필평가 : 04.24.(수) ~ 04.25.(목)(2,3학년)
 - 1학기 2차 지필평가 : 07.02.(수) ~ 07.04.(금)(2,3학년)
 - 2학기 1차 지필평가 : 09.30.(월) ~ 10.01.(화)(1,2,3학년)
 - 2학기 2차 지필평가 : 11.26.(화) ~ 11.28.(목)(3학년), 12.10.(화) ~ 12.12.(목)(1,2학년)
- 평가 시 유의사항
 - 답안 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마킹합니다.
 - 고사 종료 후에는 OCR카드 작성을 할 수 없습니다.
 - 감독교사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OCR 카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음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 평가 기간 중 휴대전화 또는 MP3, 전자사전을 소지하고 있는 행위(부득이하게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온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 당일 아침에 담임선생님께 맡겼다가 평가가 끝나고 찾아갈 것)
 - * 평가 도중 쪽지를 건네는 행위
 - * OCR카드를 2장 이상 소지 및 작성하는 행위
 - * 시험 종료 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내용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는, 부정행위의 정도에 관계없이 **관련된 학생 모두** 해당 과목 시험 성적은 **0점으로 처리**됩니다.
 - 감독교사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OMR 카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음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 평가 기간 중 휴대전화 또는 MP3, 전자사전을 소지하고 있는 행위(부득이하게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온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 당일 아침에 담임선생님께 맡겼다가 평가가 끝나고 찾아갈 것)
 - * 평가 도중 쪽지를 건네는 행위
 - * OMR카드를 2장 이상 소지 및 작성하는 행위
 - * 시험 종료 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내용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는, 부정행위의 정도에 관계없이 **관련된 학생 모두** 해당 과목 시험 성적은 **0점으로 처리**됩니다.



학생생활안전부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 스마트폰 중독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10가지 팁

● 잠자리에서 휴대폰 사용하지 않기

연구에 따르면,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휴대폰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중독 증상 해결의 시작으로 잠자리를 '휴대폰이 없는 공간'을 만들어 보길 바란다. 건강을 생각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다. 처음 몇 일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곧 괜찮아질 것이다.

● 알람시계 사용하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은 아마도 스마트폰을 들어 알람을 끄는 것이다. 만원 정도면 사는 알람 시계를 이용하자. 잠자리를 스마트폰이 없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 식사 시간은 휴대폰 없이

친구나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한두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곁에 두지 않으면 대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잠깐 살펴보지도 말라. 누군가 유머 사이트에서 본 재미있는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말로 설명하거나 종이와 펜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자.

● 불필요한 앱 삭제하기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중 대부분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6개의 이메일 계정, 레딧(Reddit)을 계속 확인하지 않는다면,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질지 상상해 보아라.

● 잠금 코드를 복잡하게 만들자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지 못하면 스마트폰 볼 일도 없다. 당장 잠금 화면을 설정하고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만들어라. 대문자, 소문자, 숫자, 기호 등을 모두 섞어서 최대 18자까지 만들자.

●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집중하라

대화 중에는 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멀리하자. 대화하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라.

● 비행기 모드를 활용하라

알림을 꺼놔도 어떤 증상 때문에 계속 알림이 온다면, 차라리 인터넷 연결을 끊어보자. 서비스가 안 되면 휴대폰을 볼 이유도 없다.

● 일주일에 한 번은 휴대폰 없는 날로

일주일에 한번은 휴대폰을 집에 놓고 나가보자. 하루 종일 혹은 반나절 정도는 휴대폰 없이 밖으로 나가자. 진짜 지도를 보고 GPS 없이 운전을 해보자.

● 천천히 시작하라

기억하라. 목적은 스마트폰 중독 증상을 해결하는 것이지 완전히 석기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단번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중단해 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지도 모른다. 천천히 시작해보자. 하루에 3,165번 확인하던 것을 조금만 줄이면 된다.



학생생활안전부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 교육

■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

	주요 유형
과거의 학교 폭력	① 폭력서클이 조직적·집단적으로 저지르는 폭력이 주류 ② 폭행, 금품갈취 등 물리적 폭력이 많음 ③ 1회성 단기적 성격을 띤 경우가 많음 ④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에 의해 저질러짐 ⑤ 주로 다른 학교 학생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함 (자기학교 학생은 오히려 보호)
최근의 학교 폭력	① 일부 학생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당수 혹은 소그룹이 따돌림 등 집단으로 행하는 형태로 변화 ② 강제적인 심부름(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협박, 집단 따돌림, 놀림 등 정신적 폭력의 형태로 다양하게 변화 - 인터넷과 스마트폰, SNS 등을 활용하여 교묘한 방식으로 괴롭히고, 집단적으로 즐기는 사례가 증가 ③ 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계속적·집중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음 ④ 주로 중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나 초등학생에 의한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등 저연령화 현상 ⑤ 학교 현장 내에서 많이 발생

■ 일반폭력과 학교폭력의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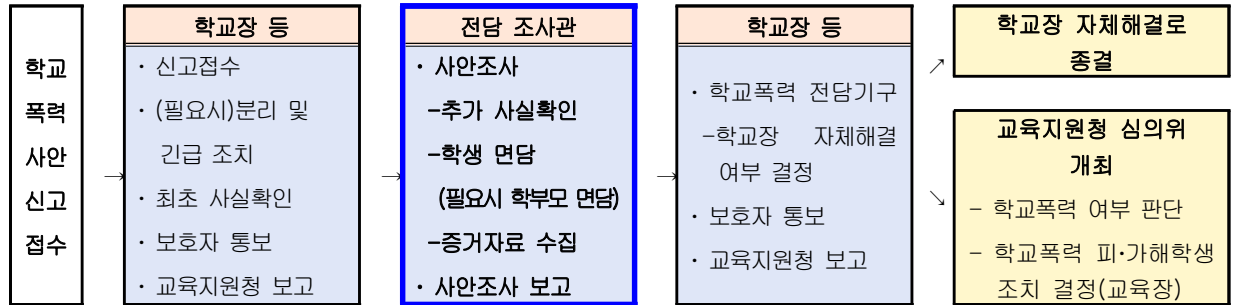
- 일반폭력은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며, 특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학교 폭력은 같은 학교·학급이라는 같은 공간 내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므로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일정 기간 가해자, 피해자가 마주치게 됨
- 일반폭력은 폭력의 당사자 외에는 제3자가 알기 어려우나, 학교폭력은 당사자 외에도 같은 학교·학급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쉽게 알려지게 되므로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속칭 '빵 셔틀'의 피해학생은 다른 친구들에게 똑같은 행동을 강요받음
- 일반폭력은 연속성이 없으나,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끊임없이 특정 학생에 대해 행해지고, 문제의식 없이 학생들 사이에 학교 내 하나의 잘못된 문화처럼 형성될 수 있음

■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행위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골탕 먹이기 등
성폭력	폭행·협박을 하여 강제적 성행위, 유사성교행위, 성기에 이물질 삽입 행위
	폭행·협박과 함께 성적 모멸감을 주는 신체적 접촉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주는 행위
사이버 폭력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문자,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위협·조롱·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으로 반복적 전송
장애 학생에 대한 폭력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따라서 장애관련 비하발언, 장애로 인한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거나 공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장애학생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사안처리에 있어서는 일반 학생과 동일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지적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장애가 다소 있는 학생의 경우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애에 요청할 수 있다.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1 학교폭력사안처리 과정(요약)



- 신고·접수 시 가해자를 피해학생과 분리(피해학생의 의사확인 후, 24시간 이내 분리 방법 결정 후 실시)
 - ※ 가해학생에게 제2호 조치 시행(관련 학생 및 보호자 통보)
- 사안 접수 후 14일 이내에 사안조사,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
-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까지 14일 이내 완료하여야 함 (7일 이내 연기 가능)
 - ※ 피해·가해학생은 피해관련(추정) 학생 및 가해관련(추정) 학생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 ※ 사안조사는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후 실시하며, 교육자료 제공 등 별도의 학습기회 제공 (평가 등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
 - ※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신청 가능

2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제출)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 다)가 아닌 경우
- ▶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 ‘학교장 자체해결’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절차로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본교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사과, 재발 방지, 관계회복 등 교육적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지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생활안전부

언어폭력 예방교육

가. 언어폭력이란?

위협적이고도 저속한 말이나 욕설 따위를 함부로 하여 상대방에게 두려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일. 특히 신체적인 약점을 지적하며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일, 성적수치심을 자극하는 일로 상대방이 상처를 받도록 하는 말장난 등이 모두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나. 언어의 폭력적 내용

욕설하기, 위협하기, 협박하기, 저주험담하기, 비웃기(희롱, 조롱), 이상한 소문내기, 약점 건드리며 놀리기, 싫어하는 별명 부르기, 흉내 내면서 놀리기, 신체 외모 놀리기, 옷차림 비웃기, 빈정거리기, 면박이나 핀잔주기, 욕이나 비난의 문자 보내기 등

다. 언어폭력의 영향

- 대인관계가 나빠집니다.
-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줍니다.
-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키워 갑니다.
- 생활에 습관화되면 자신의 인격을 훼손하고 정서 장애를 유발합니다.

라. 언어폭력의 징후 점검사항

<친구나 가족(형제·자매)과 대화(전화)할 때>

- 욕설을 자주 한다. • 빈정거리거나 면박을 준다.
- 별명을 사용한다. • 욕설이나 비난의 문자를 보낸다.

마. 청소년기에 욕설을 하는 이유

-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 또래끼리의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 습관화되면 기분이 좋아도 욕을 하게 됩니다.
- 화가 난 상황에서 당장 분을 식이기 위해 내뱉는 분풀이로 욕을 합니다.

바. 언어폭력 대처 방법

- 고운 언어 사용, 부모님이 모범을 보여 주세요.
- 부모님의 언어, 자녀 언어생활의 거울입니다. • 자녀 말에 상처 주는 말은 삼가 주세요!
- 더 많이 경청하고 더 적게 말하세요! • 따뜻한 말도 많이 해 주세요!

부모님이 무조건 야단을 친다고 해서 욕하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정에서의 대화도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욕을 자주 듣고 하다보면 도를 넘어서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좋은 언어를 모방할 수 있도록, 고운 언어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자꾸 고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객금주 교수)



학생생활안전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가. 사이버 불링의 개념

사이버불링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전자 매체를 통해 의도성을 갖고 반복적으로 욕설과 협박,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 SNS 공간에서 폭언이나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같은 정보 통신 수단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며, 의도적인 해로움을 입히는 행위들을 전통적 불링 과정의 현대판 변종이라고 생각하고 사이버 불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 사이버불링 유형

윌러드(Willard, 2006)가 제시한 욕설(flamming), 누군가에게 반복적으로 불쾌하고 모욕적인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는 사이버 괴롭힘(Harassment), 명예훼손(Denigration), 마치 다른 누군가인 것처럼 게시물을 올려 그의 평판이나 교우 관계를 망치거나 곤란을 겪도록 하는 위장(Impersonation), 의도적으로 공유하고 싶지 않은 예민한 개인정보를 폭로(Outing), 속임수(Tickery), 배제(Exclusion), 사이버스토킹(Cyber Stalking)의 구분법을 기초로 하여 정보 통신의 기술로 새롭게 등장한 유형들을 가미하는 형태로 사이버불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 사이버 불링의 문제점

가해 학생들은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 재미로 인지하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전파성이 강하고 학교공간이 아닌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피해를 당하면 24시간 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익명성과 가해자의 죄책감이 부족하여 반복성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여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사이버 폭력이 현실에서 실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라. 사이버 불링 대처법

사이버 불링의 행위가 더 확대되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성매매 사이트등 불법 음란 사이트에 피해 상대의 신상정보를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 한번 올라온 욕설과 비방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고 퍼나르기 때문에 완전 삭제가 어려우며, 또 짧은 시간에 광범하게 확산되는 것은 물론 동영상과 합성 사진 등으로 인한 시각적 충격을 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됩니다.

<조심해야 할 것>(예방 방법)	
	▸ 낯선 사람에게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려는 사람 거절하기
	▸ 검증되지 않은 파일 설치하지 않기
	▸ 성별이나 나이가 드러나는 아이디 사용하지 않기
	▸ SNS 등의 계정 비밀번호 오래 사용하지 않기
	▸ 경찰관은 절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경찰관 사칭에 주의하기
	▸ 인터넷에서 거래를 할 때 개인정보 노출 주의하기
	▸ 조건만남·성매매의 위험성이 있는 앱 주의하기

<이렇게 행동해요>(대처 방법)	
만남 요구	▸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할 때 → 만남 거절하고 대화 중단하기 ▸ 랜덤채팅앱에서 대가성 만남 요구가 들어올 때 → 응하지 않고 캡처해서 신고하기
불법촬영 ·합성영 상 유포	▸ 화장실 등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보일 때 → 즉시 112 신고하기 ▸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 신고하기 ▸ 몸 사진을 보낸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받았을 때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신고하기 ▸ 지인이 합성된 사진·영상을 봤을 때 → 당사자에게 알리고 신고 도와주기
성적 문자·영 상 전송	▸ 친구가 올린 성적인 영상을 보고 불쾌할 때 → 불쾌함 표현하기 / 대화 중단·신고하기 ▸ 성적인 욕설, 몸 사진·영상을 받았을 때 → 대화 중단·신고하기 ▸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봤을 때 → '신고/스팸' 누르기 / 다른 곳에 게시하지 않기 ▸ 몸 사진전송을 요구받았을 때 → 절대 응하지 않기 / 대화 중단하기
<도움을 요청해요>(신고·상담 안내)	
▸ 언제든지 도와드려요!	
▸ 사건을 수사해주세요 → 경찰(☎112·117 / 앱: 112긴급신고·스마트국민제보 / 학교전담경찰관)	
▸ 영상 유포를 막아주세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	
▸ 상담을 받고 싶어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 청소년상담센터(☎1388, www.cyber1388.kr), 여성긴급전화1366(☎1366),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02-817-7959, hotline@cyber-lion.com),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십대여성인권센터(☎010-3232-1318, 카톡·틱톡 cybersatto)	



학생생활안전부

가정폭력 예방교육

■ 어느 것이 가정폭력일까요?

- (가) □ 집안이 지저분하다고 상대방을 비난한다.
- (나) □ 마이 버릇을 가르치느라 욕박지르고 때렸다.
- (다) □ 당신이 없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한다.
- (라) □ 상대방이 혼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
- (마) □ 가계부와 생활비를 일일이 체크한다.

출처: 가정폭력예방교육 “NO MORE! 가정폭력!”. 여성가족부. p.11.

■ 가정폭력의 특성

- (바) ❶ 은폐되는 폭력 : 사적 공간 내 발생, 사회적인 묵인
- (사) ❷ 반복되는 폭력: 오랫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
- (아) ❸ 중폭되는 폭력: 배우자, 자녀 폭력, 부모 폭력
- (자) ❹ 순환되는 폭력: 세대 간 대물림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무의식적 인권침해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학교폭력 등 주요 범죄의 잠재적 요인이 되며, 대물림 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가정폭력 평균 지속 기간은 11년 2개월이며, 피해자의 48.2%가 10년 이상 경험하는 등 가정폭력은 일반폭력과 달리 가족 등 친밀하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그 정도로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특성을 갖는다. 더욱이 가정폭력의 대상은 다양해지고 있으며(부부폭력→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 폭력), 유형 또한 확대(신체 폭력→ 정서, 경제 폭력)되는 추세이다.

출처: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예방교육 NO MORE 가정폭력 공공기관용. p.14.

■ 가정폭력 피해 지원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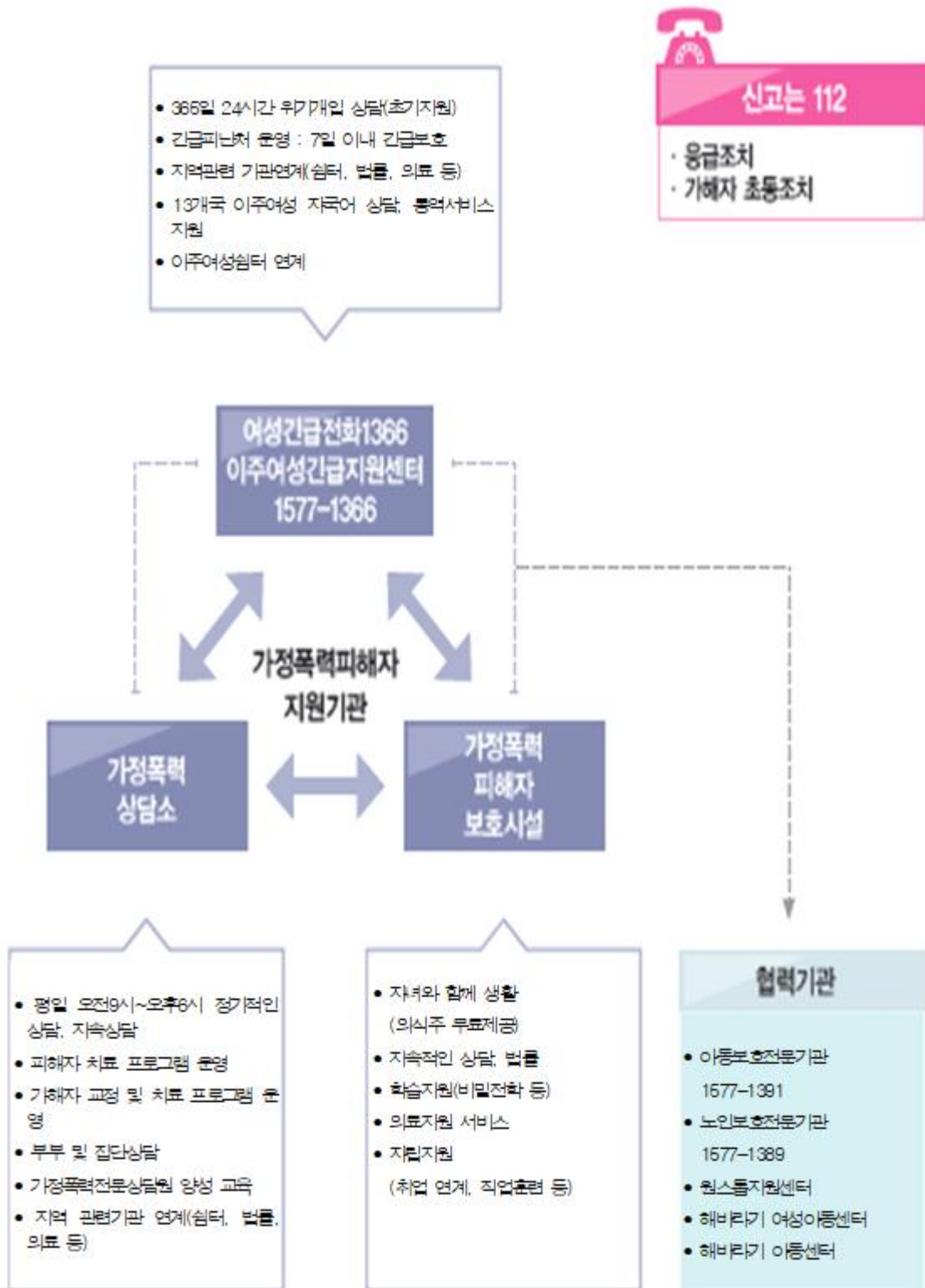
가정폭력 발생 시 이렇게	
▶ 국번없이 112를 눌러 경찰에 신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이주여성은 1577-1366로 전화하면 13개국 모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 ▶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정폭력을 당한 정황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	
▶ 상담지원	전화와 면접을 통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번 없는 특수전화“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 (이주여성은 자국어로 24시간 상담 : 1577-1366)
▶ 긴급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 가능
▶ 의료지원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보호 비용 및 무료 진료지원
▶ 무료 법률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이주여성 포함)에 한하여 가정폭력에 관련된 민사, 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법률 상담 및 무료 법률 구조 신청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 국번 없이 132, http://www.klac.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표번호 : 1644-7077, http://lawhome.or.kr
▶ 쉼터 입소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중 쉼터 입소 희망자에 한해 각 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도 별도로 운영
▶ 주거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인 주거지를 원할 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든 지원은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지원됨.	

출처: 가정폭력! 아는 만큼 멈출 수 있어요.(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 p.7.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제도

지원 종류	내용
상담 지원	• 24시간 전화상담(1366) • 피해자 치료 및 지속 상담 • 가해자 교정, 치료상담
주거 지원	• 쉼터 • 성인의 자립 지원 • 그룹 홈 지원
법률 지원	• 소송대리 지원 • 소송비용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1577)
의료 지원	• 1인당 최대 500만원 이내 • 지자체 및 지역상담소 통해 지원 가능

■ 가정폭력 도움 요청 방법





학생생활안전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부모의 바람직한 훈육방법을 익혀 우리 주변에서 불미스러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아동학대가정폭력 개념

□ 아동학대의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2 아동학대의 유형

01 신체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02 정서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03 성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04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유기)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방임)

1. 다음 중 체벌이 필요한 아이를 고르시오.

① 음식 가지고 장난을 친 ○○

② 숙제를 미리 하지 않은 □□

③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은 △△

④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닌 ☆☆

정답은 없습니다.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말아도 되는 아이도 없습니다.

[오답 노트]

체벌은 학대입니다. 2021년 민법상 징계권 폐지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아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해주세요.

아동학대 신고는 112 상담은 129

2.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는?

~~사랑의 매~~

아동 학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말아도 되는 아이도 없습니다.

[오답 노트]

체벌은 학대입니다. 2021년 민법상 징계권 폐지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아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해주세요.

아동학대 신고는 112 상담은 129



신체손상

피부결손, 화상, 골절, 안구출혈,
장기파열, 두뇌손상, 성장실패,
생리기능 변화, 사망





심리·정서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지능·자아기능 손상,
감정조절기능 저하 및 이상,
자기개념 손상(무력감), 애착형성 붕괴,
충동조절능력 저하, 또래관계 붕괴,
자학적·자기파괴 행동, 정신병리

아동학대 후유증

3 아동학대 가정폭력 신고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아동학대 신고	- 누구든지 학대 피해아동 발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함 -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 범죄 신고 전화(112)로 통합
----------------	---

※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한다. 「아동복지법 제45조」

● 광주광역시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

관할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광주광역시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cyber1391.or.kr/)	062-385-1391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 현장조사, 사례관리, 심리검사, 심리치료 지원(무료), 상담 및 교육

4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 1) 자녀가 자율적인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존중받는 아이가 타인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생활을 합니다.
- 2)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과 상담을 하세요.
- 3) 가정에서의 폭력이나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에게 학습됩니다.
- 4) 부모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생생활안전부

학부모 대상 인권 교육

<세계 인권선언>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아서는 안된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19조(아동학대와 유기로부터의 보호) 국가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보호의 책임을 진 자의 학대행위가 있을 시 아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적절한 사회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제24조(보건 및 보건 서비스) 아동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보선 및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일차적 예방적 보건 서비스 제공, 국민보건교육, 아동사망을 감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가는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고 필요한 보건 서비스의 이용권을 박탈당하는 아동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

<헌법>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인권의 특성 ●

- 인권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인권은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에 기초하여 나옵니다. 여기서의 '타고난 존엄성'은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 인권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인간은 인간이 스스로 존중할 때에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이 인간의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칙이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인권은 사회의 관습이나 규범 등 어떤 조건으로든 제한할 수 없으며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인권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권리입니다. 이것은 인권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 권리'라는 것과 대립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약자들은 마땅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여러 기본 조건을 누리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인권은 약자의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더 강조될 뿐입니다.

- 인권은 책임을 동반한 권리입니다. 한 개인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인권과 관련하여 갖는 책임은 자신의 인권을 알고 누려야 하는 책임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지켜주어야 하는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납니다.

- 인권은 개인과 집단을 포괄한 권리입니다. 인권은 단순히 한 인간의 권리로만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인권 침해현상이 사회구조와 관련되거나 국제적 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인권을 주장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한 개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사회집단이나 구조에 초점을 둘 경우 인권은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사회집단 모두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 광주학생인권조례

제9조 (학생인권 보장의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 법」 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에 의거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 하거나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연구활동을 방해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생 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의「모든 국민 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는 규정을 확인하고, 학생 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이 규정에 따라「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권은'최소한의 권리'이다. 따라서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 리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 이상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무방하지만, 만약 이러한'최소한의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 한다면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할 수 없고, 행복한 삶을 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단체(기관)명 소재지 홈페이지 전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http://blog.naver.com/nhrcgwangju> 062-1331

한국인권재단 광주 <http://www.humanrights.or.kr> 02-363-0208



학생생활안전부

성(성희롱·성폭력·성매매)통합 예방 교육

1.

성 비위(성폭력·성추행·성희롱·성매매) 예방

아동 성폭력 가해자는 낯선 사람보다 어린이가 아는 사람(친구, 이웃,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린이의 집, 학교, 등·하교 길 등 근접해 있는 곳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부터 예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또래 친구끼리 자주 발생하는 성폭력은?

- 가. 야한 말이나 농담, 사진, 동영상을 카카오톡, 밴드 등 SNS로 보냄.
 - 나. 친구의 몸에 대해 놀리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말함.
 - 다. 장난하는 척 친구의 바지를 내리거나 치마를 들추는 행위.
 - 라. 장난하는 척 슬쩍 가슴이나 상대방의 생식기를 만지는 행위.
 - 마. 외모에 대한 별명을 지어서 놀림.
- ※ 무심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성폭력이며 처벌 대상임을 기억해요.

3.

학부모 지침 및 준수사항

- 가.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자녀의 안전을 지킵니다. 항상 자녀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나. 성(性)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자연스럽게, 즉시 그리고 진지하고 정직하게 가르칩니다.
- 다. 성에 대한 느낌과 가치관은 부모님을 보고 가장 먼저 배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사랑하는 모습과 존중하는 태도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성교육입니다.
- 라. 자녀가 자주 다니는 곳에서 집을 오가는 길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미리 둘러봅니다.
- 마. 아는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면 참지 말고 단호하게 싫다는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며, 즉시 자리를 피하도록 알려줍니다.
- 바. 위험상황을 알아채고 피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표현과 대처방법을 알려줍니다.
- 사.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구매 관련 카페나 글을 발견하면 즉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합니다.
- 아. 부모님은 가정에서 항상 아이들 앞에서 고운 말, 좋은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성폭력 피해 자녀, 부모님의 대처·방법

- 가.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 주고, 믿어 주고, 감싸 주고, 보호해 줍니다.
- 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아이의 표정, 행동 등을 관심 있게 봐주세요.
- 다. 발생한 장소, 날짜, 시간, 가해자의 얼굴과 옷차림 등 자녀가 한 말을 그대로 기록해 둡니다.
- 라. 성폭력은 자녀의 잘못이 아니며, 성폭력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음을 말해줍니다.
- 마. 부모가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5. 자녀와 성에 관한 대화 방법

- 가. 텔레비전 뉴스나 드라마 등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말할 기회를 찾습니다.
- 나. 부모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자녀의 생각을 듣고 소통하도록 합니다.
- 다. 성 문제에 관한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라. 자녀에게 말할 때는 하나의 주제만으로 이야기합니다.
- 마. 자녀를 지나치게 어린아이 대하듯 말하지 않습니다.

6. 성 비위 피해 상담 및 지원센터

- 가. 경찰서 국번 없이 112
- 나.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 여성 긴급전화 1366
- 다. 청소년 긴급전화 1388
- 라. 사이버수사대 :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접속 후 사이버 범죄 신고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활용 안내

「스마트폰 설치 및 이용방법」



① 앱스토어에서 ‘성범죄자 알림e’ 앱 검색 ② 본인인증 ③ 지도검색 ④ 성범죄자 확인

- 조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성명, 사진, 나이, 신체 정보, 실제 거주지, 전자장치 등
- 알림 기능으로 설정: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거주하는 성 범죄자를 음성과 메시지로 제공 받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정시간 : 1시간, 12시간, 24시간, 미설정
- 조건검색을 통해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 반경 1km 이내 성 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하여 알게 된 각 성범죄자의 인적사항을 공유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등에 의거 금지 (다만, 학생의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범죄 알림e' 웹 사이트 안내 및 조회방법 전달, 홍보는 가능)



학생생활안전부

생명존중(자살 예방) 교육

- 전국 학생자살 사안 분석결과, 자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은 **가정문제(34.3%)** > 비관·우울(17.6%) > 성적문제(12.0%) 순이며 자살사건 직전 촉발요인으로 **부모님의 꾸지람(52.9%)** > 비행문제 발각(20.4%) > 성적(4.1%)입니다. 따라서 자살예방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발달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 자살의 원인과 특징

- 청소년 자살은 가정불화, 부모와의 관계악화, 경제적 궁핍 등 가정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
- 대화부족으로 자녀의 자살위험성에 대한 부모의 인지도가 낮음
- 충동성이 강해 순간적으로 이뤄지며,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투신, 추락시도가 많아짐
- 친구관계에서의 소외감,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을 경우, 성적관련 부모자녀의 갈등으로 생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문제해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음

※청소년 자살은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정신과적 질환보다 일반적인 사건이나 스트레스에 의한 시도가 더 많다.

■ 자살을 예고하는 징후들

- 자살자의 심리부검결과 81.8%가 자살 경고신호로서“도와주세요”-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 직접적인 징후
 -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혹은 자살을 시도한 일이 있었던 경우 다시 자살을 기도할 가능성이 크다.
 - 주위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죽고 싶다”고 말을 한다.
 - 죽음과 관련된 책, 자살사이트나 영화 등에 집착한다.
 - 일기장이나 SNS, 친구에게 죽음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유언장과 같은 글을 쓴다.
- 간접적인 징후
 - 행동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주의해야 한다. 평소에 순종하던 아이가 사소한 일로 부모에게 짜증내고 도전적 발언을 하거나, 평상시와 다른 반항과 파괴적 행동 및 급격한 성격변화를 보일 때 자살의 위험성을 생각하여야 한다.
 - 평상시와 달리 성적이 계속 떨어지거나, 장기결석, 가출 등을 한다.
 -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며 무력감, 무감동, 무관심의 상태가 된다.

● 상징적 표현

- 자살을 모험적이고 로맨틱하게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자살 충동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다.
- 수면패턴에 변화가 생긴다. (불면증이었던 사람은 갑자기 숙면을, 숙면을 취하던 사람에게는 불면증)

■ 자살 예방 지도

1 자녀의 마음 따뜻하게 도와주기

1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느낌을 표현해 주세요.

"요즘 기운도 없고 우울해 보아 걱정이 된다."
"성적도 떨어지고 엄마한테 화를 내는 횟수가 많아진 것 같아 서운하기도 하지만 걱정이 된다."

2 과도한 관찰보다는 기다려 주세요.

"요즘 학교에 가기 싫다는 말을 자주하는데 무엇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알고 싶어."

3 긍정적으로 상호작용 하세요.

하루에 1회 이상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세요.
"오늘 학교에서 가장 즐거웠던 일 또는 힘들었던 일을 엄마에게 이야기 해줄래?"
월 3회 이상 가족 활동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어디를 가면 좋을까?"

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아보세요.

"엄마가 네 힘들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있는지 고민이 된다.
그래서 너를 더 많이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러 함께 가보면 어떨까?
엄마도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배우고 싶어."

5 약물치료를 고려해 보세요.

약물치료는 뇌에서 우울과 불안, 공포 등의 감정을 담당하는 호르몬의 조절을 통해 고통을 주는 부정적 감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약물은 감가약처럼 중독성이 없으며 치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가장 좋은 치료제는 보호자의 따뜻한 사랑이에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더라도 가족 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고통과 함께 가족의 힘들도 지속될 것입니다.



학생생활안전부

청소년 자녀를 돕기 위한 자살예방 지침서

■ 청소년기 자살 행동의 특징

자살 시도를 증가	· 신체적, 정서적 변화로 격동의 시기 / 지적 변화로 기존의 가치나 규범에 도전하는 시기 · 자아정체성이 발달되지 않아 정체성의 혼란 / 학교생활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
충동성	· 부모나 주변 어른들의 잔소리가 싫어질 때 충동적으로 선택 · 여러 사람 앞에서 비난이나 꾸중을 들었을 때 충동적으로 선택
전염력이 강함	· 피암시성(자신의 믿음, 의견, 기억, 태도 등에 타인이 제시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 연예인이나 추종자의 죽음이나 주변 사람들의 자살을 접했을 때
분명한 자살동기	· 고통의 끝이나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선택 / 분명한 이유를 만들어 합리화하는 경향 · 남을 조종하거나 보복하려는 동기로 선택
죽음에 대한 환상	· 판타지 소설이나 인터넷 게임 등의 영향으로 죽음에 대한 환상 · 죽음이 문제해결의 한 방법이라는 잘못된 생각

■ 자살시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신호들

- 행동적 의사표현 : 약이나 위험한 물건 수집, 의미 있는 소유물 정리, 자살사이트나 엽기사이트 등에 심취 등
- 언어적 의사표현 : 말, 글, 그림, 낙서 등을 통해 자살을 언급 등
- 상징적 의사표현 : 성적이 떨어지거나 조퇴, 지각, 결석이 잦음. 평소와 다른 기분이나 행동의 변화, 식사나 수면상태의 변화 등

■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자살 위험의 아이를 발견하였을 때 부모들이 흔히 취하는 잘못된 태도)

- ① 자책하기 : “우리 아이가 이러는 것은 다 나 때문이야.”
- ② 분노하기 :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어?”, “그럴 거면 차라리 진짜 죽어!”
- ③ 지키기 어려운 약속 하기 :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사줄게.”, “유학 보내줄게.”
- ④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하기 : “네 나이 때에는 다 그럴 수 있어.”, “별 거 아니야.”
- ⑤ 비아냥거리기 :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잘해.”

■ 부모님의 역할

- 자녀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관찰을 통해 항상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 부모님의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자녀의 삶의 모델이 되어 주세요
- 자녀와 충분한 열린 대화 시간을 통해 정서의 변화를 파악 하세요
- 장점을 찾아 칭찬하여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 주세요

■ 전문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

- 생명의 전화(1588-9191 : www.lifeline.or.kr)
- 보건복지콜센터(129, www.129.go.kr)
- 사랑의 전화(1566-2525 : www.counsel24.com)
- 한국청소년 상담원(1388 : www.kyci.or.kr)
- 정신건강 HOTLINE :(1577-0199 : www.suicide.or.kr)
- **광산중학교 Wee클래스(601-6845)**
- 한국 자살예방 협회(413-0892/3 : www.suicidereention.or.kr)



학생생활안전부

Wee 클래스 이용 안내



We + Education (상담교육) +



We + Emotion (감성) +



→ 나(I)와 너(You)속에 우리(We)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지도하고

감성과 사랑이 녹아 있는 Wee공간에서 잠재력을 찾아내는 우리들의 감성 공간

■ Wee 프로젝트 세계도



■ 광산중 Wee클래스에서 하는 일

-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성격, 학습, 교우관계, 자존감 향상 등)
- 심리검사(인성검사, 성격검사, 학습능력향상검사 등)
- 특별교육 상담프로그램
- 교육프로그램(생명존중교육 등)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심층상담
- 또래상담반 운영
-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상담치료

■ 이용안내

- 이용대상 : 다양한 고민이 있거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및 자녀상담이 필요한 학부모 누구나
- 이용시간 : 학교 운영시간 내에 가능(사전 요청 시 방과 후도 가능)
- 이용장소 : 본관 2층 2학년 교무실 옆 
- 이용방법 : 직접 방문하거나 담임교사와 상의하여 상담신청
- 문의전화 : 062)601-6845
- 홈페이지 : <http://gwangsan.gen.ms.kr>

■ Wee가 궁금해~

- Q1 Wee는 누가 이용 하나요?
☞ 고위기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민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일반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 Q2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을 이용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 Q3 학교를 등교하지 않고 Wee센터, Wee스쿨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출결은 어떻게 되나요?
☞ Wee 센터는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상담 서비스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전에 학교에 동의**를 얻은 후 참여하여야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Wee 스쿨도 시·도 교육청 소속기관으로 해당학교에 협의와 동의를 얻어야 결석 처리가 되지 않으며 기존 학교의 학적이 유지됩니다.
- Q4 상담 받은 내용은 비밀이 보장 되나요?
☞ 상담실에서의 이야기는 **비밀과 안전을 절대 보장**합니다.



학생생활안전부

학교안전계획

■ 목표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 및 학교안전망 강화를 통한 각종 폭력 및 범죄 예방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며 학교생활 속에 스며드는 안전문화를 조성한다.

■ 안전한 학교 만들기

- 24시간 안전한 학교시스템 운영
 - 가) 교내 CCTV 운영
 - (1) 목적 : 학교 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과 외부인 무단출입 단속
 - (2) 설치 장소 : 안전생활 취약지구
 - 나)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와 운영
 - (1) 목적 : 학생 안전보호를 위한 순찰요원 배치 및 시설 보완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
 - (2) 배움터 지킴이 배치와 노인일자리 사업연계를 통한 순시 순찰 강화
 - (3) 학생 등하교 지도 및 취약시간대에 학교 내외 순시 순찰 및 외부 방문자 교내 출입 관리 및 민원 안내
- 안전 주간 운영으로 안전 생활화
 - 가) 매주 월요일을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아침 조회시간이나 협의회 시간 등을 활용하여 5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과학, 체육, 실과, 가가, 미술 등 실습이 있는 교과는 수업시작 전이나 실습 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나) 실습 중심의 다양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 학교의 등·하교시 교통상황을 반영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주변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안전한 통학을 위한 생활 밀착형 활동을 전개한다. 자전거를 통학하는 학생을 파악하여 별도의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 다)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관련 교육 실시 : 위기관리 대응체계 매뉴얼에 따른 대처 등을 교육하고 발령단계별로 행동요령을 숙지하도록 한다. 민방위 훈련과 재난대비훈련과 연계하여 현장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 안전점검의 날 운영
 - 가) 학교안전 점검표-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이용하여 각 교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표를 만들어 운영한다. 점검 후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도록 한다.
 - 나) 안전점검의 날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안전 관리를 위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학교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게 한다.

(1) 세부 운영 계획

- 매월 4일 안전교육, 월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08:30 ~ 08:50 : 안전교육 및 안전훈화(담당교사 및 담임교사)
- 08:50 ~ 12:30 : 분야별 안전점검

● 월별 안전교육 및 훈화 실시 내용

월별	주 제	교육 형태	담당자
3	- 신학기 교통안전 - 학교폭력예방교육	훈화 및 가정통신문 발송	안전교육부교사 학생부교사 학급담임
4	- 교내외 생활 안전 지도		
5	-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		
6	- 풍수해 안전 - 생명존중교육 - 식중독, 전염병 예방		
7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 가정폭력 예방교육	훈화 및 가정통신문 발송, 방학계획서에 내용포함	
8	- 신학기 교통안전 - 학교폭력 예방교육	훈화 및 가정통신문 발송	
9	- 교내외 생활 안전 지도 - 추석연휴 안전 - 자살예방의 날		
10	- 생명존중교육		
11	- (가정, 성)폭력추방 주간 운영 - 생명존중교육		
12	- 겨울철 화재 예방		
1월	- 겨울 스포츠 안전		
2월	- 설 연휴 안전		

● 교직원 안전관련 직무연수 이수

- 안전교육에 관한 의식 고취와 효율적인 지도 방법 및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전교직원이 함께 하는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 운영으로 학생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장한다.
- 2022년 전 교직원의 안전 관련 직무 연수 15시간 이상 이수
(2021년.3.~2023년 까지 누적)

●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

- 교육과정에 안전교육 내용을 반영하여 지도하며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한 교육을 연간 51시간 이상 운영 실시한다.



학생생활안전부

교육복지로 즐겁고 신명나는 학교생활

■ 「교육복지사업」이란?

- 지역 간, 학교 간 점점 심화되고 있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학교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복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력 향상, 문화체험, 정서적 안정, 복지지원 등 청소년 삶의 전반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 2023년 교육복지 프로그램

단위사업	프로그램명	추진내용
주·인·공 교육활동	진로탐색 〈내 꿈 잡아요〉	꿈을 키우는 동아리 활동 <하비로운수요힐링동아리> 밴드&미술동아리 - 대상 : 희망학생 - 기간 : 2023. 3월~2024. 01월(연중) - 사업내용 :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 자신의 특기를 발견하고 진로 및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진로체험 아카데미 (네일아트,그린테라피,홈바리스타 등) - 대상 : 희망학생 및 교육복지대상학생 - 기간 : 2023.04~2024.01 (연중) - 사업내용 :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관심있는 직업체험활동을 계획, 자신의 꿈과 진로방향을 스스로 고민하고 계획, 실천 할 수 있도록 운영
	마을변화 프로젝트 “마을성장학교”	- 대상 : 교육복지대상학생 및 희망학생 - 기간 : 2023. 05~08 - 사업내용 : 마을의 청년들과 함께 청소년이 마을의 문제를 파악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참여의 기획자이자 생산자로서 자립매김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인·공 교육활동	교육과정연계 아는 만큼 보인다	- 대상 : 전교생 - 기간 : 2023. 03~12 - 사업내용 : 학생이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온전히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고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사회속에 민주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교육활동 전개
	빈곤,위기학생 지원	- 대상 : 교육복지대상학생 - 기간 : 2023.03~2024.12 - 사업내용 : 빈곤,위기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긴급생활지원 (교복,체험비,생활용품,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끼덕끼덕 학생보호망	그루터기 교육복지실운영	- 대상 : 전교생 - 기간 : 2023.03~2024.02 - 사업내용 : ■ 교육복지사업관련 지역사회연계 및 사업 총괄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협력 체계 구축> ■ 점심시간을 활용한 보드게임실 운영, 학생상담 및 치유
	교육복지사업 운영	- 대상 : 전교직원, 교육복지사업 실무자 - 기간 : 2023. 03~2024. 02 - 내용 : 학교가 중심이 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소요되는 각종 운영비를 지원 함으로 효율적인 교육복지사업추진



학생생활안전부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예방 교육

■ 성교육에 임하는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자세

- 성교육을 위해 부모님들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 성에 대하여 엄격하며 금기시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 자녀들의 성적 성숙을 인정하여 현실 감각을 갖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부모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 딸이나 아들 모두 이성(異姓)의 성 발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성교육은 과학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 윤리적인 면을 병행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 질문에 답할 때는 당황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불충분한 대답이라도 좋으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자연스러운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준비하고 있다가 계기를 포착하여 성교육을 합니다.
- 정확한 성지식을 알고 있어야 잘 지도하므로 부모 자신도 올바른 성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 부모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교사나 상담기관을 찾습니다.

■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말로 하는 것, 보여주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성폭력은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을 포괄합니다.

이는 신체적인 접촉을 얼마나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며, 가벼운 추행이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고, 당하는 사람의 심정이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모욕감을 느꼈다면 성폭력으로 봅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사이라도 신체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만지는 행동, 상대방의 몸에 대해 놀리는 등 수치심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영상, 사진, 그림 등을 보여주는 것 모두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발생장소

(2018년 여성의전화 상담자료 발췌)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가해자나 피해자의 집	숙박업소 등	야외, 대중 교통 시설	주택가, 이면도로	자동차 안	화장실, 주차장

* 성폭력 가해자 유형

아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가족 및 친척
65.8%	18.8%	15.4%

■ 성폭력 발생시 대응절차

❀ 부모 대응 절차(우선순위 및 시간대별)

- 자녀의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 ONE-STOP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혹은 성폭력상담소에 연락하여 문의 및 상담을 한다.
- 자녀의 성폭력 피해를 알게 된 즉시 경찰(112)이나 ONE-STOP지원센터에 신고한다.
- 성폭력이 의심되는 근거들을 보존한다.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되는 의학적 근거는 진찰을 받아야 얻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성폭력 발생시 대처방법



- 사건현장에서 증거가 안전한 것들을 확보합니다.
- 몸을 씻지 말고 속옷등을 갈아입지 마세요.
- 옷을 갈아입었다면 세탁하지 말고 종이봉투에 담아 출동한 경찰관 혹은 센터에 제출합니다.
- 다친 부위는 사진을 찍어두고 진단서 등의 의학적 증명을 받도록 합니다.
- 가해의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 처벌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용의한

(48시간 이내 입은 옷차림 그대로, 몸을 씻지 않고 병원 방문)

- 학교에 연락한 후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 및 배려를 요청한다.
- 사건 수사, 민사 소송 등 법적 문제, 자녀 치료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 부모의 유의사항

- 자녀에게 침착하고, 흥분하지 않으며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 자녀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고 믿어주고 감싸고 보호해준다.
- 성폭력은 피해자 잘못이 아니고,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안심시킨다.
- 부모가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지 않는다.
- 부모의 미흡한 대처로 수사 및 치료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 기관을 통한 의료 및 상담 지원, 법률적 지원을 받도록 한다.
- 자녀에게 피해사실의 심각성을 강조하거나 부각시키지 않는다. 어린 아동의 경우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의 행동으로 자신에게 큰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불안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피해 사실에 대해 자녀에게 추궁하듯 반복해서 묻거나 대답을 강요하지 않고, 자녀를 비난하는 언행을 삼간다.
- 의문이 있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혹은 ONE-STOP 지원센터 등 전문가에게 문의한다



학생생활안전부

가정 안전 교육

■ 중독 예방음란물을 위해 가정에서 지켜야 할 일

음란물을 보게 되면 성에 대해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되거나 청소년 성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란물을 보면 만지고 싶고 실제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상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 인터넷 게임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제한 시간을 주세요.
- 컴퓨터는 거실 등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좋아요.
-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음란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
- 음란물의 성격을 설명해 주고 혹시 경험할 기회가 있더라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불법 음란물의 장면이 현실과 왜곡된 큰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정에서의 흡연예방 교육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는 데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흡연율이 높으므로 부모 자신이 담배를 피우면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을 그만큼 단축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담배에 대한 호기심이나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유혹 및 압력에 이겨내도록 부모님의 분명하고 단호한 신념을 보여주고, 그 신념이 자녀와 일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께서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금연 가정의 자녀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자녀에게 혹은 가족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다.
- 자녀가 함께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 ➡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습니다.
- ➡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 가족과 함께 외식 시에는 금연 지정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 자녀가 담배를 피우는지 잘 살펴주시고 금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하되 무엇보다 사랑으로 대화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와의 의미 있는 대화시간을 가지세요! 청소년들에게는 그 어떤 금연운동보다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 흡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감염병 예방

○ 손씻기와 기침예절

○ 음식을 조리하기 전, 화장실 이용 후, 식사 전, 외출 후 철저한 손 씻기

[올바른 손씻기 6단계]



[기침예절]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는 “기침예절” 준수하기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실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마스크 사용권고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참고 :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시

2~6 km/hr, 자전거 운행시 12~20 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 환기요령 >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단, ‘나뽀’ 이상시 자연환기 자제)
-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분 이상 환기
-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 스마트폰 ‘우리동네 대기질’ 앱 설치

- (설치방법)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우리동네 대기질’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 미세먼지 예보 결과 및 지역별 경보발령 상황 제공

※ 문자서비스 신청 <예보 문자 신청>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 (www.airkorea.or.kr) → 고객의 소리 → 문자서비스



1학년부

2024학년도 1학년 생활 안내

■ 1학년 담임교사 소개

학급	1	2	3	4
담임교사	백은정	김근샘	윤준성	도은아
지도교과	기술가정	도덕	미술	사회

■ 학교 생활

○ 학년 규칙

가. 등교 시간 (8시 40분까지)

나. 아침 10분 독서: 독서기록장에 기입 후 생활기록부 독서활동에 기재

다. 휴대폰: 휴대 가능하나 수업 중 휴대폰 전원 OFF

라.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 만들기

- 1) 인사 잘하기
- 2) 배려하는 말하기(고운 말 쓰기), 경청하기
- 3) 갈등이 생겼을 때 회복적 서클을 통한 문제 해결
- 4) 학급 및 학년 휴게실 규칙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기
- 5) 급식 질서 교육 -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서로의 영혼을 나누는 것
- 6) 이동수업 시 다른 학생의 공간 소중히 사용하기
- 7) 교실 및 복도에서 장난치거나 뛰어다니지 않기
- 8) 소통과 대화로 서로 존중하는 학교 만들기

마. 교복- 현재 교복 구입 자율화이나 협의 필요

○ 연간 운영 계획

영역	활 동 내 용	목표	추진 시기				반성 및 재 구상	담당
			1/4	2/4	3/4	4/4		
○교육 과정 운영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자유학기제 계획 수립 및 추진 · 교복 공동 구매 수요 조사 및 구매 · 교내체험학습 실시 및 차년도 계획 추진 · 수련회 실시 및 차년도 계획 추진 · 진급사정안 작성 및 점검 · 생활기록부 입력 및 점검 · 출석부 및 결석계 관리점검 · 진로 및 인성지도	1 1 연중 2 2 2 수시 수시 수시	1 1 1 1	 1 1	 	 1 1 1		1학년 부장 및 담임
○1학년 학급운영	·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 교육 · 교실 및 학생 휴게실 환경 꾸미기 · 아침 독서활동 · 독서록 작성하기 · 청소 임장지도 및 깨끗한 교실 만들기 · 학부모상담을 통한 연계 지도 · 학교 안전사고 지도 · 기초질서 다지기 강화 · 급식실 예절 지도 · 학년 협의회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담임

■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안내

- 자유학기제란
 - 1) 학생 참여형 수업 기반 교과 활동으로 교과 간, 교과 내 협력을 통한 융합·연계형 수업 방식 운영
 - 2) 과정 중심 평가 기반 교육활동으로 지식,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지필식 평가가 아닌 학습한 내용에 근거하여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함.
- 자유학기제의 목적
 - 1) 핵심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해 학생 배움중심 수업 및 과정 중심 평가 실현
 - 2) 중학교 생활 적응 및 학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진로 교육까지 연계
 - 3) 공교육 변화와 신뢰 회복
- 자유학기제의 운영
 - 1) 1학기에만 운영
 - 2)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3)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진로 탐색 활동 4개 영역으로 운영
 - 주제선택: 한 땀 한 땀 나의 진로, 나만의 책 쓰기 과학적 시선, 수학과 놀자
 - 예술체육: 독서 명상 요가반, 신나는 음악 여행, 생각을 그림으로, 뽕뽕 전래오락실
 - 동아리: 방송댄스, 티볼, 배드민턴, 축구

- 4) 교과 성취도 미산출, 이수 여부만 성취도란에 'P'로 입력
- 5) 교과학습 발달상황 및 자유학기 활동 상황에 개별학생의 성장과 발달의 정도가 드러나도록 평가 결과를 기록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학생의 활동 과정 및 참여 태도, 활동 후 성장 정도 등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문장으로 기록)

○ 자유학기제 운영 시간표(1학기)

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1						
2					동아리활동	
3			진로탐색 활동 - 3반		진로탐색 활동 - 1반	
4			진로탐색 활동 - 2반		진로탐색 활동 - 4반	
5		주제활동				예술·체육활동
6			예술·체육활동		주제활동	
7						

*1학기 동안 총 170시간 운영

*진로탐색활동은 수업시간표에 따라 이뤄짐.

*동아리 활동은 스포츠클럽으로 운영



2학년부

2024학년도 2학년 생활 안내

1) 목적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생활화한다. 학생 중심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급운동을 통해 자치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모둠 활동으로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학급 운영을 실천한다.

2) 방침: "스스로 바로 서고 함께 성장하는 우리"

가) 학생들 스스로 주도적인 학급문화를 형성한다.

나) 자기주도적 성장을 위한 아침 독서를 생활화한다.

다) 깨끗한 학급환경을 구성하기 위하여 학급 환경 꾸미기를 한다.

라) 실내에서 정숙, 복도에서 뛰지 않기 등 기초질서 다지기를 강화한다.

마) 지속적인 지도로 교사와 학생이 협력하여 깨끗한 교실을 만든다.

바) 학부모들과 수시로 지면 및 전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와 가정의 연계된 교육을 실시한다.

사) 급식실 질서지도와 예절지도를 실시하여 질서 있고 즐거운 급식실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활동한다.

3) 연간 운영 계획

영역	활동 내용	목표	추진 시기				반성 및 재 구상	담당
			1/4	2/4	3/4	4/4		
○교육 과정 운영	.교내체험학습 실시 및 차년도 계획 추진	2		1		1		2학년부장
	.수학여행 실시 및 차년도 계획 추진	2			1	1		2학년부장
	.진급사정안 작성 및 점검	2		1		1		2학년부장
	.생활기록부 입력 및 점검	수시						담임
	.출석부 및 결석계 관리점검	수시						담임
	.진로 및 인성지도	수시						진로교사
○2학년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 교육	연중						담임
	.환경 꾸미기	연중						
	.아침 독서활동	연중						
	.독서록 작성하기	연중						
	.깨끗한 교실 만들기	연중						
	.학부모상담	연중						
	.청소 임장지도	연중						
	.기초질서 다지기 강화	연중						
	.급식실 예절지도	연중						
	.학년 협의회	연중						

4) 2학년 현장체험학습 계획

가) 기간: 2024년 10월 10일(목)~2024년 10월 11일(금) 1박 2일

나) 대상: 2024학년도 2학년 전체 학생 중 참여 희망 학생

다) 장소 : 경기권

라) 운영 방법 : 여행사를 통한 위탁 운영

마) 경비 지원 : 1인당 20만원(교육청 지원금)학습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아이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바)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다.



3학년부

2024학년도 3학년 생활 안내

1) 목적

'도전과 성장'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2) 방침

- 가) 학생 참여 수업을 통해 배움에 대한 자존감을 형성하고 **배움 중심 수업**을 실현한다.
- 나) **비폭력대화**를 실천하여 교육공동체의 평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인권친화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 자율과 책임의 태도를 기른다.
- 다)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를 통해 자발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민주시민의식을 기른다.
- 라) 진로탐색의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삶의 좌표**를 찾도록 돕는다.
- 마) 개인의 특기, 적성, 흥미를 고려한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지도**를 실시한다.
- 바) 아침 독서, 5분 **독서 활동**을 통해 미래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도록 지도한다.
- 사) **교과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통합적 사고력을 기른다.
- 아) 가정과 연계한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을 수시로 상담하여 **예방적 생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운영 계획

가) 연간 계획

영역	활동 내용	목표	추진 시기				반성 및 재구상	예산 (천원)	담당
			1/4	2/4	3/4	4/4			
3학년 교육과정 운영	.모듬 협력 학습 운영	연중							
	.도전과 성장 프로젝트(학기말 교육과정)	1학기말		1					
	.수련활동 실시	1			1			9,000	
	.진로 및 인성지도	연중							
	.생활기록부 입력 및 점검	2		1		1			
	.출석부 및 결석계 관리 점검	4	1	1	1	1			
	.교내 체육대회 활동	1	1						
	.특성화고교 진학설명회	1~2		1	1				
	.원서 작성 및 진학	2			1	1			
	.한 학기 한 권 읽기(작가와와의 만남)	학기말		1					
	.학부모 진학 설명회	1			1				
학급 운영	.아침 독서지도(학년 비전 연계)	연중							
	.학급 비전 세우기, 학급 규칙 정하기	2	1		1				
	.사제동행, 학급 특색활동	4	1	1	1	1			
	.회복적 생활교육 및 인성교육	연중							
	.학급 자치의 활성화	연중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연중							
	.학교 기물파손 점검	매월							
진로상담 및 진학지도 충실	.학부모 진학 상담	연중							
	.학생진로, 진학 상담	연중							담임

나) 진로·진학 지도 및 상담 활동 강화

(1) 지도 방침

(가)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 소질과 적성,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능동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직업 세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미래사회와 새로운 직업에 대해 전망해 봄으로써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 관련 안내문을 발송 등을 통하여 진학과 관련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다) 진학설명회를 2학기에 1회 개최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 마이스터 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고등학교 진학에 관한 설명회를 갖는다.

① 일 시 : 2024년 9월 25일(예정-학교 상황과 관련하여 변동 변경 운영될 수 있음)

② 대 상 : 3학년 학부모

③ 내 용 : 고입 전형 설명회 및 진로 교육

(라)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설명회 :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담당자를 학교로 초청하여 고교별 특성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① 일 시 : 2024년 7월 또는 9월 (예정-학교 상황과 관련하여 변동 변경 운영될 수 있음)

② 대 상 : 3학년 학생

③ 내 용 :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정보

(마) 개별 상담을 하여 맞춤형 개별 진로 교육을 실시한다.

(2) 지도 내용

(가) 2025학년도 고입전형에 관한 학부모 안내 자료를 발송하고, 9월 중 학부모 대상 진학설명회를 실시하여 소질과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지도를 학부모님과 공유하도록 한다.

(나) 이메일이나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SMS 서비스를 통하여 가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어려움과 당면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상담활동을 강화한다.

(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목표를 한 가지씩 선정하여 긍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진로교육을 실시한다.

(라) 가정방문, 학부모와의 상담 주간 등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 및 생활교육 등 다양한 면에서 학교와 가정이 연계 지도를 실시한다.

다) 행사 활동

(1) 학교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현장감 있는 교육활동이 되도록 하고, 체험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 (2) 치밀한 사전 계획을 통해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추억에 남을 수 있는 체험학습이 되도록 한다.
- (3) 체험활동, 교통수단 이용, 숙식 등의 이용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전지도를 한다.
- (4) 현장 체험학습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장양점을 파악하여 추후 체험활동에 반영하도록 한다.
 - (가) 수련활동 일시 : 2024년 10월 10일(목)~10월 11일(금)
 - (나) 장소 : 전북 완주 청정인성수련원
 - (다) 대상 : 3학년
- (5) 학급별로 특색 있게 학급 급우들의 단합 및 친목을 위한 학급 활동을 운영 및 사제 동행 활동을 실천한다.



3학년부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주요일정

구분	영재학교 광주과학고	전기					후기				
		특수목적고등학교			대안 특성화고	특성화고	자유형 공립고	과학 중점학교	일반고		
		광주체육고	광주예술고	광주자동화 설비공업고 (신설유치부중점학교)	동명고	특성화고, 서진여고 (전문계열)	광주고 광주제일고 수원고 상일여고 전남고	조대여고(2) 상무고(2) 풍암고(2) 보문고(2) ()는 학급수	평준화	비평준화	
				광주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신설유치부중점학교)						호남심육고	광일고 서진여고(보통과)
모집 공고	24.4.19. (금)	24.7.12. (금)	24.7.12. (금)	24.7.12. (금)	24.8.22. (목)	24.8.22. (목)	24.8.22. (목)	24.8.22. (목)	24.8.22. (목)	24.8.22. (목)	24.8.22. (목)
내신 성적 산출 기준일	2학년2학기 까지	3학년 1학기 까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까지 24.10.31.(목)	3학년 1학기까지	3학년2학기 중간고사 까지 24.10.31.(목)	3학년2학기 중간고사 까지 24.10.31.(목)	전학년 성적 24.12.11. (수)	전학년 성적 24.12.11. (수)	전학년 성적 24.12.11. (수)	전학년 성적 24.12.11. (수)	전학년 성적 24.12.11. (수)
원서 접수	24.5.22.(수) ~5.24(금)	24.10.23. (수)	24.11.6. (수)	24.10.14. (월)	24.11.25. (월)	24.11.25. (월)	24.12.17. (화)	24.12.17. (화)	24.12.17. (화)	24.12.17. (화)	24.12.17. (화)
		24.10.29. (화)	24.11.8. (금)	24.10.17. (목)	24.11.28. (목)	24.11.28. (목)	24.12.23. (월)	24.12.23. (월)	24.12.23. (월)	24.12.23. (월)	24.12.23. (월)
전형일	1단계 24.5.30.(목) ~6.28(금) 2단계 24.7.7.(일) 3단계 24.8.10.(토) ~8.11.(일)	24.11.7. (목)	특별전형 24.11.20(수) 일반전형면접 24.11.28.(목) 일반전형 24.11.29.(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10.21.(월) 인·적성 검사 24.10.25.(금) 심층면접 24.10.26.(토)	학교별 모집요강 참고	학교별 모집요강 참고				학교별 모집요강 참고	학교별 모집요강 참고
합격자 발표	1단계 24.6.28.(금) 2단계 24.7.26.(금) 3단계 24.8.23.(금)	24.11.14. (목)	특별전형 24.11.22(금) 일반전형 25.12.3.(화)	24.10.30. (수)	24.12.6. (금)	24.12.6. (금)	25.1.9. (목)	25.1.9. (목)	25.1.9. (목)	24.12.30. (월)	24.12.30. (월)
학교 배정 발표							25.1.23. (목)	25.1.23. (목)	25.1.23. (목)		
등록 기간		23.11.15. (금) ~ 23.11.21. (목)	24.12.4. (수) ~ 25.12.10. (화)	24.10.30. (수) ~ 24.11.4. (월)	24.12.6. (금) ~ 24.12.11. (수)	24.12.6. (금) ~ 24.12.11. (수)	25.1.23. (목) ~ 25.2.4. (화)	25.1.23. (목) ~ 25.2.4. (화)	25.1.23. (목) ~ 25.2.4. (화)	24.12.30. (월) ~ 25.1.6. (월)	24.12.30. (월) ~ 25.1.6. (월)
1차 추가 모집 기간				24.11.5. (화) ~ 24.11.6. (수)	24.12.12. (목) ~ 24.12.16. (월)	24.12.12. (목) ~ 24.12.16. (월)				25.1.9. (목) ~ 25.1.15. (수)	25.1.9. (목) ~ 25.1.15. (수)
2차 추가 모집 기간					25.1.9. (목) ~ 25.1.15. (수)	25.1.9. (목) ~ 25.1.15. (수)					

* 전기고에 지원하는 졸업자의 내신 성적 산출: 전 학년 성적

* 고등학교 입학 전형 일정은 교육부의 지침 변경 및 타 시·도간 고등학교 입학 전형 일정 조정 등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획에 의거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할 수 있음